



한국인권재단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1003호
전화: 02-6261-1210, 1211 팩스: 02-6261-1213
E-mail: khrf@humanrights.or.kr

제주인권학술회의 2000

G1.53

한국인권재단

제주인권학술회의 2000

- 일시 : 2000.2.25. - 28.
- 장소 : 서귀포KAL호텔
- 주최 : 한국인권재단
- 후원 : ◎대한항공
▲현대증권

G1.53

목차

제주 인권학술회의 2000 프로그램

(* 논문 현장 배포)

2월 25일 14:00 - 18:00 전체회의

기조강연: 한국현대사와 인권 (지명관,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소장)

발제: 1. 일상의 억압과 인권 (김은실, 이대 교수)*

2. 소수자의 인권 (한인섭, 서울대 교수)*

3. 인현동 화재사건을 통해 본 청소년의 인권 (박인혜, 인천여성의전화 회장)*

2월 26일 09:00 - 12:00 분과별 회의

(1) 국가권력과 정신적 자유

- 국가권력과 사상·표현의 자유(남규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백승현, 변호사)

- 남북한 국가권력과 '합의독재'(Consensus Dictatorship) (임지현, 한양대 교수)

(2) 평화운동과 인권

- 평화운동과 인권: 여성평화운동의 관점에서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교육위원)

-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연대 (김창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실장)

- 평화를 만든다는 것 (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사무국장)

(3) 전쟁중 민간인의 인권

-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 사건과 해결방향 (정희상, 시사저널 정치팀장)

- 베트남 참전과 관련한 인권문제 (구수정, 한겨레 21 베트남 통신원)*

- 국제법상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책임의 귀속 (조시현, 성신여대 교수)

2월 26일 14:00 - 17:00 분과별 회의

(4) 호주제와 관련된 인권문제

- 한국여성운동의 2000년 핵심과제: 호주제 폐지운동 (지하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호주제도의 여성통제와 국가통제 (양현아, 사회학 박사)

-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강금실/이석태, 변호사)

(5) 학교내 성폭력의 문제

- 학교성폭력과 여성의 인권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 대학 내 성폭력 해결사들의 인권 (이숙경, 시립대 강사)

(6) 가족 구성에 관한 여성의 권리

- 독신모(미혼모)의 모성과 여성성, 그들 자녀들의 권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 (진현숙)

- 우리사회의 한부모 (신경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부소장)

- 가족 구성에 관한 여성의 권리 (박혜경, 이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2월 26일 19:00 - 20:30 분과별 회의

(7) 인터넷을 통한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 (전웅휘, PeaceNet 사무처장)*

정보통신기술의 혁명과 사이버 권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2월 27일 09:00 - 12:00 분과별 회의

(8)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의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권리의 법적 성격 (이찬진, 변호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활동의 경과 (송경용, 기초생활보장법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9) 시설수용자의 인권문제

- 에바다 사태의 전개과정과 전망 (권오일, 에바다학교 교사)

- 사회복지시설의 쟁점과 대안-입소시설을 중심으로- (박주현, 변호사)

(10) 빈곤층 어린이의 인권:

-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인권 (정금자,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교육복지팀장)
- 아동인권개선을 위한 수양부모운동 (박영숙, 수양부모협회 회장)

2월 27일 14:00 - 17:00 분과별 회의

(11) 소수자들의 인권문제

- 동성애자 인권 (임태훈,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 공동대표)
- HIV 감염인과 AIDS 환자들의 인권 (황상익, 서울대 교수)*
- 한국사회에서 매춘여성의 지위와 인권문제 (유태희,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사무국장)

(12) 유교와 인권

- 여성인권과 유교: 여성인권 개념 확장을 위한 유교적 탐색 (이숙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초빙연구원)
- 개화기의 「인민의 권리」 개념 수용 (정용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초빙연구원)
- 유교의 인권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영선, 전북대 정외과 강사)

2월 27일 저녁 19:00 - 20:30 분과별 회의

(13) 스크린쿼터제와 문화적 권리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실장)

(14) 국가인권기구 입법운동의 중간평가 (곽노현, 인권기구 공대위 집행위원장)*

2월 28일 오전 전체회의

종합토론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강금실 · 이석태(민변 변호사)

I. 관점과 주제

일반적으로 호주제도 폐지론에서는 양성평등위반의 관점에서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한 시각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였다. 호주제도의 헌법질서에서의 위치지움을 살펴보고서, 그 위헌성의 근거를 양성평등은 물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과 인간의 존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의 주제는 두 가지이다. 법 상식에 비춰보면, 호주제는 가족 사이의, 배우자 사이의 주종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헌법의 평등권보장, 인권이념에 반한다. 이와 같이 명백한 위헌적, 반인권적 제도가 어떻게 하여 근대적 헌법이 들어선 지 50년이 넘도록 존속할 수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다. 그러한 의문은 호주제도가 정착될 당시는 물론 그 고착을 가져온 시기의 정치권력의 성격에 주목하게 한다. 호주제도가 부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표현임은 명백하다면,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남성중심사회의 문화적 의식구조만에 기대어 유지되어올 수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인권적 제도는 무엇보다도 그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권력의 의지에 기대어 생존하는 법이다. 다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그 힘은 “유림”이라는 하나의 세력에 의하여 명백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유림의 실체적 성격과 논거에 대한 법리론에서의 이론적 반론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호주제가 호적편제의 형식일 뿐이고, 그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양성평등이념과 실제로 살아 있는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의 교착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나가는데 무슨 실익이 있는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된다. 폐지론의 논거에서는 이점에 관하여도 법리론에서의 이론적 반론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글의 주요한 두 번째 주제는 실제로 호주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소송상의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헌법재판소가 1997.7.16. 민법 제809조 제1항의 동성동본금혼제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선언을 하여 그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1999.12. 국회에서는 오히려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민법개정안을 뒤집고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폐지의 기대는 가능성에 별로 없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빠른 폐지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II.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헌법은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통합하기 위한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¹⁾를 선언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인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이다.²⁾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 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으로 설명 되기도 하고,³⁾ 그 외에도 국민주권의 원리, 책임정치의 원칙, 행정의 합법률성이 거론된다.⁴⁾ 어느 경우에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초석이자 핵심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헌법의 근본규범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 하겠다.⁵⁾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한 항목인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혼인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를 기본적 인권의 제도화로서 이해하고 기본적 인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독일헌법 제1장 기본권 제6조에 혼인과 가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헌법 제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의 위 기본권 조항을 근거로 해서 가족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제도화이며 기본적 인권의 한 내용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는 공적 영역의 정치질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또한 그 논의의 심도나 범위에서 상당한 이론적 축적을 한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가족제도를 민주적 기본질서의 한 내용으로서 거론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

1) 헌법 전문과 4조(평화적 통일지향)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 8조(정당) 4항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로 규정하고 있고, 그 양자의 개념의 동일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2)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 89헌가113 결정 ;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1997), 100쪽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1995), 203쪽 참조

3)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 89헌가113 결정

4) 독일헌법재판소 1956.8.17. 결정 ;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1998), 139쪽 참조

5) 김철수, 앞의 책, 100쪽

의 한 항목임이 명백한 한 가족제도를 민주적 기본질서의 한 내용으로, 그 기초적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요소로 하는 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질서와 관련된 가족제도는 국제인권법상으로도 기본적 인권의 주요항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되어 왔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신의 존엄성과 남녀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16조 제3항에서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위단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1항은 국제인권선언 제16조 제3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제4항에서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 중 및 혼인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중의 양성평등의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선언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로 가입되어 있는(제16조 g항, “가족 姓에 대한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부분은 유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를 열거하여 그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제16조).

2. 가족제도의 기본형태인 호주제도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요소로 하는 헌법상 제도로서의 가족제도는 하위법인 민법의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에서 혼인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의 17개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조항을 일일이 검토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 중 하나인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제781조 제1항은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고 규정하고, 혼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826조 제3항은 “妻는 夫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夫가 妻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후자의 경우에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의 가에 입적한다(제826조 제4항). 또한 제8장에서는 호주승계에 관한 12개 조항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민법상의 가족제도는 1990.1.13. 호주제에 관한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상속제도와 호주의 거소지정권 등의 권리, 부양의무 등 그 실체를 제거하여 호주제는 사실상 형해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예외적으로 배우자인 여성의 호주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승계에서 제1순위는 직계비속남자로 규정하고(민법 제984조),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를 금지(민법 제789조)하여 장남자에 의한 호주승계를 전제

하고 있으며, 혼인의 자의 입적에 있어서도 남성호주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입적시킬 권리를 가지나, 처의 경우에는 호주의 동의를 얻게 함으로써(민법 제784조, 제785조), 남성호주 중심의 호적편제를 기초로 한 가족제도의 구성원리는 분명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의 가족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이 편제되고, 그 호적을 단위로 가족이 성립되며, 호적의 주체는 호주이고, 배우자와 자녀는 가의 구성원이 되며, 호주는 지배적으로 남성이 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III.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현행 호주제도가 헌법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인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되는 호적상의 가를 사회의 기초단위로 규정하는 제도 자체가 위헌인가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행 호주제도는 아직도 입적에 있어서의 차별과 호주의 강제승계적 성격의 조항들을 두고 있으나, 민법개정에 의하여 사실상 호주제도 자체를 형해화시켰고, 그럼에도 그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호주제의 문제를 지적하려면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조항을 아무리 삭제하더라도 호주와 가족의 기본적 구성원리가 남아 있는 한 초래되는 위헌적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호주제도가 현재와 같이 형해화되어 상징적인 것으로 남게된 상태에서도 굳이 폐지할 실익이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즉, 아직도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차별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자체가 문제이지, 호주와 호적제는 법제도에 불과하며, 그 제도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실사회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 폐지한다고 해서 가부장제이데올로기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 아니한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명을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호주제도의 반인권적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위반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명제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현재의 호주와 가족구성원을 단위로 하는 호적상의 가족제도는 이와 같은 존엄과 양성평등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구성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입적행위를 통한 당연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것은 자녀의 경우에도 연속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당연입적은 강제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어느 일방의 배우자가 다른 배우

자의 호적에 입적을 강제당한다고 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반한다 할 것이다.

개인의 존엄, 인간의 존엄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인격주체성을 보호하는 것이며⁶⁾ 인격성의 본질은 자율성이며 “자기결정성”이다. 따라서 호적제도에 의한 일방적 입적의 강제는 인간의 존엄으로서의 자기결정권에 반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침해하는 것은 배우자 상호간의 남성과 여성 아니라, 호적을 단위로 한 가족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사라는 것이다. 국가권력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규범을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개인을 단순한 객체로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호적에 의한 가족의 구성은 개인의 의사를 강제적으로 “擬制”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우자를 객체로 취급하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성평등과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家의 등록 公簿를 가정하여 본다면, 그 것은 양성의 수평적 관계를 표현하고, 양성과 인격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자녀가 등재되는 것으로서, 양성의 평등한 합의와 인격의 자기결정권이 의해되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위와 같은 논리에서 호주제도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는 점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남성 중심의 호적을 편제하고, 여성에게 그 혼인을 통하여 그 호적에 입적을 강제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를 기초로 자유로운 혼인의사에 의한 합의의 실체에 위배되는 형식이며, 민주주의적 법치질서에 반한다. 또한 혼인의 제도화에 있어 다른 방식의 입적과 가의 구성방법이 봉쇄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로운 혼인행위의 한 요소-인격적 자유권을 바탕으로 한 양성의 결합-를 통제하는 법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3. “호주” 개념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여기에서는 권리의무관계의 실체가 형해화된 상태에서의 호주 개념 자체를 문제삼기로 한다. 그럼에도, 형해화된 상태에서도 “호주”라는 개념 자체가 반인권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가족제도가 호주와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고, 주로 여성인 한쪽 배우자가 호주의 가족으로 구성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호주” 개념 자체가 주종관계, 한쪽 배우자의 다른 배우자에 대한 포섭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평등에 반하며, 인간의 존엄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이성의 자율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자유의 관점이 그 핵심이고, 인간의 자유의사는 인격을 구성하는 기초이다.⁷⁾ 모든 법제도는 자유의사를 갖는 인격주체로서

6) 김병곤, 인간의 존엄, 교육과학사(1996), 118쪽,

7) 김병곤, 앞의 책, 191쪽

의 인간을 전제로 배치되어야 한다. 호주와 가족이라는 구성원리는 평등한 배우자 사이에 주종관계를 강제함으로써 인격주체의 자유의사에 전면으로 배치된다.

4. 제도와 현실의 영향관계

호주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는 실익은 첫째로, 위헌이며 반인권적 성격이 명백한 하위법제도를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법제도에서 상위법인 헌법과 하위법제도, 관행이 배치되는 경우는 허다하게 발견되고, 인권문제는 바로 그와 같은 제도 사이의 간격으로부터 발생한다. 제도의 적합성 아래에서 제도가 잘못 운영되기 때문에 비롯되는 인권침해문제에 앞서서, 우리 법제도는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규명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헌법의 법제화와 법제도의 역사가 괴리되어 있는데에서 비롯된다. 해방 이후 헌법은 들여왔지만, 일본제국주의시대에서 왜곡된 근대화의 연원을 갖고 있는 법제도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분단시대의 국가권력이 정권유지를 위하여 반근대적 악법을 만들어내거나, 강화, 고착시켜온 연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헌인 하위법제도를 폐지하고, 개혁하여 나가는 일은 그 자체가 근대적 법제도의 정비화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근대화를 향한 개혁의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주제도는 위헌성의 논란을 가져오는 대표적 악법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여야 한다.

둘째로, 호주제 폐지는 단순히 死文化된 법의 폐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의 실익이 있다. 제도가 사문화 되었다는 의미는 그 제도형식에 부합하는 실체가 현실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제도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는 사문화된 법이 아니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떠받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살아 있는 법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이점에 관하여는 두 가지 논거를 덧붙일 수 있겠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근대화를 향한 법제도 개혁의 과정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이유에서 반근대적, 반인권적 법제도의 개폐 그 자체가 상당한 사회적, 현실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고, 이 점이 우리 사회에서의 법제도의 특수한 기능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제도는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현실에서 행위규범으로 기능하며 현실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는 법의 “규범적 진보성”론으로 설명되기도 하는 부분이다.⁸⁾

8) “법의 진보성은 오히려 비본래성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법규범의 본래적 의미를 현실화시킨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법은 상부구조로서 토대의 변화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동시에 토대의 변화를 바람직하게 가도록 결정하는 지도의 권한을 갖는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법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제도와 법통도와 불가피하게 대결하는 장이 형성될 수 밖에 없으며 이 대결의 장에서 가장 ‘정의로운 기준’을 지켜가면서 소기의 목적 즉 시대정신으로서의 법을 실현시켜야

IV. 호주제 존속근거의 정치적 성격과 비판

호주제도가 민법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형해화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구성원리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가족제도가 호주제를 근본골격으로 하고 있어서, 호주제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행 가족제도의 해체를 가져오는 제도변혁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현재 까지 호주제를 존속시켜온 원인이 무엇인가를 짚어보는 일은 결국 헌법과 인권론에 부합하는 가족제도의 변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과 정치적 세력의 정체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1. 호적제도의 정착과 일본 천황제 파시즘의 영향

한국의 전통사회라 할 수 있는 고려이후 이조시대에 이르기까지 유교이데올로기가 지배한 봉건제사회에서 종법제를 바탕으로 한 호적과 호주제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관계는 사실주의에 근거하여 관습에 맡겨져 있었고, 호적은 신분을 확인, 명시하는 기능도 있었지만, 주로 세원의 확보, 요역 징수, 주거파악의 목적으로 운용되었다.⁹⁾ 이와 같은 호적제도가 현재와 같은 家와 가에서의 개인의 신분에 관한 등록제도로 획기적으로 개혁된 것은 일본식민지시대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의한 것이고, 일본천황제의 “家”제도의 이식, 침투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적되어 왔다.¹⁰⁾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宗家”는 있었고, “戶口”的 관념으로서의 호적은 있었지만, 호적을 단위로 한 “家”的 관념은 없었던 것이다.¹¹⁾

근대화, 근대적 법률관계가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개인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할 때에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사법상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¹²⁾ 법적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하여 신분에 관한 등기제도를 갖추는 것 자체는 분명 근대적 의미로의 법개혁이라고 할 것이다.¹³⁾ 문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정상적인 근대화경로를 하는 것이다.” 백운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헌법실천’, 헌법해석과 헌법실천(민주주의법학연구회편), 도서출판 관악사(1997.6.), 139쪽

9)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195쪽 이하 참조

10) 최홍기, 앞의 책, 187쪽 이하;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1987), 441쪽 이하; 이상욱, ‘일제하 전통가족법의 왜곡’,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 교수 환갑기념논총 발간위원회 편), 박영사(1991);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6), 27쪽 이하; 양현아, ‘한국의 호주제도’, 여성과 사회(제10호/1999), 창작과 비평사, 218쪽 이하 등 참조

11) 이상욱, 앞의 글, 383쪽

12) 최홍기, 앞의 책 191쪽

가로막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었고, 특히 신분관계에 관한 법제도는 민족말살을 최종목표로 한 동화정책¹⁴⁾에 의하여 변형되어갔다는 점, 또한 이 당시 수입된 일본천황제의 “家”제도 자체가 근대시민사회의 법이 아니라 봉건적-가부장제적 성격의 것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근대화의 과정을 밟았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무엇보다도 종래 봉건제적 가부장제이데올로기애 기한 호주제도를 존속시킴으로써 제도상으로 주종적 신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봉건적 호주제도를 더욱 고착,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가. 천황제와 가족국가사상, “家”的 창출

일본 메이지유신을 통하여 정착된 천황제는 고대와 근대의 결합과 모순¹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당시 성립된 대일본제국헌법(1889.2. 공포)은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받지 않는다”(3조)는 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천황을 헌법초월적인, 고대의 전제군주제적 지위에 두는 것이다.¹⁶⁾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 천황제 파시즘 이데올로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측면으로 가족주의적 경향과 농본주의적 사상을 들었다.¹⁷⁾ 일본의 국가구조의 근본적인 특질이 언제나 가족의 연장체로서, 즉 구체적으로는 가장으로서의, 국민의 총 본가로서의 황실과 그 赤子에 의해 구성된 가족국가로 표상된다는 것이며, 고대의 혈족사회의 구성을 그대로 보존·유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충효일치의 사상은 메이지 이후의 절대국가의 공권적 이데올로기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국가 사상은 국민의 정신적 지배를 위한 원리로써 발포된 교육칙어(1890.10.)의 내용으로서, 천황에의 충과 부모에의 효를 도덕의 근간으로 하여 유교윤리의 덕목을 열거한 것이며, 충의 대상인 국가의 천황제에 대응하여 효의 대상인 봉건적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법률로 고정될 필요가 있었다.¹⁸⁾ 따라서 이 당시에 일본천황제는 민법제정(1898년)을 통하여 봉건시대 무사계급의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엄격한 가부장제 가족제도¹⁹⁾를 천황제파시즘 이데올로기의 유지와 강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출’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일본의 지배적인 가족관계가 가부장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자본

13) 최홍기, 앞의 책, 187쪽 이하 참조

14) 박병호, 앞의 책, 443쪽

15) 井上 清, 日本의 역사(일본의 역사, 서동만 옮김), 도서출판 이론과 실천(1989), 302쪽

16) 井上 清, 앞의 책, 303쪽

17) 丸山眞男,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김석근 옮김), 한길사(1997), 78쪽

18) 井上 清, 앞의 책, 305-307쪽

19) 井上 清, 앞의 책 307쪽

주의의 발달, 상품생산의 발전, 직업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의 인정에 의하여 가부장제는 차츰 약화되는 추세에 있었고, 평등한 부부중심의 가족제도도 상당히 주장되고 있었다.²⁰⁾ 그런데 일본의 신 민법이 이와 같은 시대의 추세를 역행하여 호주상속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부장제의 강화를 강행한 것은 바로, 근대화 과정에 있는 현실의 반영으로서의 입법보다는 천황제 파시즘의 물적 제도적 기초로서의 가족제도의 강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나. 호주제도의 파시즘적 본질

일본식민지시대에 이르러 정착된 호주제도는 우리 전통사회와의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한 호구조사방식에서 실제 거주상태와는 무관한 추상적인 ‘가’의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점²¹⁾이 가장 큰 변화로 지적된다. 그로 인하여 호주제도에 의한 호적의 등재방식이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혈통 중심의 추상화된 가족만을 표상함으로써 현실과 유리되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는데, 이는 바로 위와 같은 파시즘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위하여 창출된 일본 호주제도의 본질이 극명하게 반영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호적 제도의 본질이 가족의 실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기초단위인 가족으로부터 식민지통치를 통하여 일본 천황에까지 이르는 가족국가, 파시즘사상의 관철을 위하여 도모되었다는 점에서 그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2. 해방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정치권력의 성격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58.2.에 이르러 민법이 제정·공포되었다(법률제471호). 이 당시에 현행 호주와 가족제도는 그 뼈대를 갖추게 되었는데, 호주와 가족의 장을 두고서 호주상속제를 규정하고, 가족의 현실적인 동거생활의 기반과는 관계 없는 ‘법률상의 가’의 관념을 설정하고, 호주와 가족간의 신분관계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였다. 즉, 민법의 호주제도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현실공동생활만을 규제하려는 입법이 아니고, 일제시대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호적법상의 현실과 유리된 의제적 “가”관념을 담습한 것이다.²²⁾

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민법의 제정과정

이 당시 가족제도의 근대적 변혁을 가로막은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광동현 교수는 민

20) 井上 清, 앞의 책, 307쪽

21) 양현아, 앞의 글, 220쪽

22)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인권과 정의(통권 81호/1982.10),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정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정치세력의 성격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²³⁾ 그에 따르면, 이 당시는 첫째 해방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 도입된 서구민주주의 사상과 일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고주의사상간의 대립현상, 둘째, 국토분단상태에서 남한의 반공국시가 반일정책과 더불어 추진될 때 일제 억압하게 있던 유교세력이 반일의 가치를 높이 들게 됨으로써 당시의 국체에 보조를 맞추게 되었으며 동시에 유교윤리를 부흥시켜 고래의 전통관습을 존중했다는 점, 셋째, 전 국토가 6·25 전란을 겪어 전통적인 가족질서가 파괴되고 이것이 흡사 유교적 도덕관의 퇴조에서 나온 결과라고 평가됨으로써 다시 유교적 가족질서의 재건에 좋은 구실을 주었다는 점, 넷째, 민주주의 사상이 도입됨에 따라 전래의 가치관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에 지도자(정치가 특히 국회의원 등)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농촌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장로층의 여론을 활용함으로써 전통성에 편중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반현상이 민법심의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해방 후 남녀평등을 비롯한 민주주의 사상이 풍미하였으나 1948년 정부수립을 계기로 정치사회의 혼란, 독재정권에 의한 민주단체의 탄압 등으로 민주주의운동이 부진하게 되자 유교적 전통사상이 마치 국가공인의 도덕을처럼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적 계몽운동이 전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좌익진영의 지도하에 있다보니, 1948년 정부수립 후 이승만 정권이 국가보안법 등의 제정으로 좌익언론을 봉쇄하였고, 반공과 반일정책을 철저히 전개하면서 사상적으로 일제에 억압되었다가 풀려 복고운동을 전개하던 유교사상을 반공이데올로기로서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 교묘히 반공사상과 유교사상이 한 노선에 부합된 것이다. 6·25전쟁으로 가족질서가 무너지고,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현저히 많아지고, 여성을 전통적 가족관에서 일탈케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줌으로써 전후 급격히 혼인의 패턴, 이혼의 증대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었다. 또한 이른바 소설 '자유부인'(1954년) 파동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류사회의 일부 성적 퇴폐풍조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민법전초안에 참여하였던 정치지도자들에게 사회현상의 원인이 유교적 가족관이 황폐화한 결과로 받아들여져서 유교의 재건에 힘쓰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헌법에 부합하는 민주적 가족제도의 입법화와 이를 반대하는 의견의 논란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실제 민법안 심의과정에서, 제정과정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던 국회의원들은 그 당시 농촌사회의 보수적 장년층이 가족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투표권)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년층의 여론에 기울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정치권력의 반근대성

위와 같은 논의가 구체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민법 제정과정을 들러싼 사회현실적 영향

23) 곽동현, '호주제도에 관한 연구', 1979.2., 58쪽 이하

을 분석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일제하에 정착된 호주제도가 존속하게 된 보다 근본적 원인으로서 당시의 정치권력의 성격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호주제도가 존속하게 된 원인은 1차적으로 정치권력의 성격에 있다. 이를 입증하는 두 가지 사례로서 전후 일본에서의 신민법제정과 북한의 가족법제정의 흐름을 들 수 있다. 파시즘이 지배하던 일본사회나, 북한사회가 남한의 사회현실과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본은 과거의 "가"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을 아예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호적도 폐지되고 새로 부부와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가족제도를 만들었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이념에 따라서 1946.7.30.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여 제9조에서 "본 법령의 발포와 동시에 조선녀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제국주의 법령과 규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족법에 관한 종래의 모든 규범의 실효를 선언하였다.²⁴⁾ 여기에서는 국가·경제·문화적, 사회·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제1조), 자유결혼의 권리(제4조)를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에 따라 1982.12.7. 민사규정을 제정하였다.

근대적 헌법을 제정한 남한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근대국가 수립의 의지만 있었다면 당시의 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법제도를 정비하고 가족법에서도 또한 호주제는 폐지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의 이승만 정부는 봉건적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의식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지배구조를 확립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반민주성이 지적되며²⁵⁾ 곽동현 교수도 봉건적 유교이데올로기와 반공주의의 결합을 지적하였거니와, 식민지 유산 청산은 커녕 친일파 세력이 민족주의 세력과 비판적 지식인 세력 및 정권의 반대파를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반대파 탄압의 도구로서의 반공주의를 내세우고 실제로는 친일성을 지녔다고 하는 것이다.²⁶⁾ 한상범 교수는 당시 이승만 정권의 성격을 "한국판 천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²⁷⁾

또한 1958년 민법 제정당시의 국회는 여당인 자유당은 물론 야당도 당시 이승만정권의 독재에 대한 반독재, 또는 민주로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반동적 지주계급의 정당으로서의 기원을 갖는 한민당의 변용이었으며, 이는 1948년 제한국회의후 분단이 가속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진보적 민족주의 세력이 소멸되고, 중도파 이상의 좌파세력들도 소멸하여 극우세력 일변도의 협애한 정치의 제도화에서 형성된 정치세력이었다는 점이 지적된다.²⁸⁾ 여기에서의 극우세력이란, 한민당을 중심으로 식민지사회에서의 지주·산업자본가·

24) 법무부 간,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1)-민사관계법-, (1992), 274쪽

25) 한상범, '한국에서 서양근대법 수용과 봉건이데올로기와의 갈등', 헌법학과 법학의 제문제(허 경 외 편), 박영사(1996), 27쪽

26) 한상범, 앞의 글, 27쪽

27) 한상범, 앞의 글, 27쪽

28)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주)나남출판(1998), 69쪽 · 85-87쪽

식민지관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식민지 지배체제와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던 세력이다. 이와 같은 정치상황에서 호주제를 뒷받침하는 두 개의 이데올로기의 결합, 즉 봉건적 가부장제와 천황제로부터의 유산인 파시즘적 본질이 해체, 소멸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3. 근대적 산업화와 정치권력의 반민주적 성격

한국전쟁과 4·19혁명, 제2공화국을 거쳐 1960년대에 성립한 박정희 정권은 18년 동안 한국 사회를 통치하였고, 1992년 이른바 문민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년의 기간 동안 박정희 정권의 성격과 그 정체성을 같이 하는 개악적 강화로서의 군사정권이 한국사회를 지배하였다. 박정권하에서의 근대적 산업화의 과정은 “권위주의적 산업화”로 규정된다.²⁹⁾ 이것은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정치적 권위주의를 토대로 산업화과정 자체도 통제되었다는 의미이거니와, 여기에서 반민주적 권위주의의 성격과 내용에 관하여 새삼 구체적으로 거론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두 가지 점만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로,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의 성격은 일제하의 파시즘적 유산과 봉건적 유교이데올로기의 공고한 결합을 바탕으로 한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춘 교수는 1950년대 이후 분단상황과 냉전체제하에서 성립하여 당시까지 유지되어온 국가권력의 성격을 “안보국가”³⁰⁾로 표현한다. 분단국가, 분단사회의 수립은 시장질서, 자본주의질서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국가개입, ‘의사’파시즘적 지배질서, 독점자본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고, “안보국가”的 통치이념과 안보사회의 범이데올로기의 원칙 속에는 시장경제를 배타적으로 용인하는 원칙과 국가개입주의의 원칙이 출발부터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이다.³¹⁾ 1960년대 이후 박정권에 의해 추진된 산업화과정은 “반공의 경제적 기반강화”, 즉 안보국가의 토대구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국가안보-경제성장-시장경제질서는 짹을 이루어 사회적 정당성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³²⁾ 박정희정권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등장한 유신정권하에서의 충효이데올로기의 강화, 국민교육현장 제정과 같은 메이지 유신 당시의 천황제 시기를 연상시키는 정책실행들을 기억하고 있거니와, 이와 같은 정치상황에서 유교이데올로기와 일제의 파시즘 유제의 청산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로, 호주제와 같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고착시킨 제도 자체가 정권의 유지는 물론 근대적 권위주의적 산업화의 과정자체에서도 악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점에 관하여 김동춘 교수는 시장질서의 ‘보호막’으로서의 “가족주의”的 문제를 지적한

29) 최장집, 앞의 책, 29쪽

30) 김동춘, 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1997), 88쪽, 108쪽 이하

31) 김동춘, 앞의 책, 109쪽

32) 김동춘, 앞의 책, 110쪽

다. 한국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가족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억압과 소외를 회피시키고, 시장에 대한 저항력을 둔화시키는 ‘스폰지’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가족은 남성노동자의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하였으며, 이러한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내의 권리주의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가족을 쉽게 며날 수 없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여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은 양성평등의 구조가 아니라, 남성우위의 이데올로기, 가부장주의, 가족복지를 정당화하는 ‘핵가족주의 비판’이 데올로기에 의해 유지되는 가족일 수밖에 없다.³³⁾

다른 한편 이와 같은 가부장적 가족주의는 산업화초기에 노동집약적이며 수출주도적인 정책과정에서 미혼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력을 동원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미혼여성이 갖는 노동능력을 국가안보와 국가건설을 위한 국가의 이해에 통합시키면서 性差에 의한 집합적 범주로서의 여성이나 계층으로서의 노동자의 이해를 국가이해에 종속시켰다는 것이다.³⁴⁾ 노동 현장인 공적 영역에서 미혼 여성들이 경험한 정체성은 국가, 부모, 회사를 위해 일하는 공적 가부장제 내 ‘근로 미혼여성의 지위’였다는 것이다.³⁵⁾

결론적으로 반민주적 정권에 의한 산업화시기에 한국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은 근대적 산업화과정에서도 여성억압의 가부장제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정치권력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주종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관계의 형성을 요구하였으며, 기초단위로서의 가족제도에서 주종관계를 기초로 하는 호주제는 정치권력과 산업화과정의 필요악으로서 존치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V. 호주제 폐지 반대세력으로서의 유림의 성격과 논거

1. 유림의 조직적 반대운동의 흐름

곽동현 교수는 1958년 신민법 제정당시의 복고적 유교사상이 정치권력과 결합하여 지배이데올로기로 떠올라서 호주제폐지를 가로막은 시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유림의 재건기로서, 유림세력이 호주제폐지를 비롯한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개입하였던 것은 아니다. 유림세력이 조직적이며 가장 주요한 반대세력으로 떠오른 것은 1975년 당시 민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가정제도 개정 법률안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가족제도개악법안 반대투쟁선언을 벌인 이후부터이다.³⁶⁾ 그후 유림은 1981년에 다시 성균관, 유림회

33) 김동춘, 앞의 책, 113쪽

34)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1999년 가을 통권 8호), (주) 도서출판 삼인, 91쪽

35) 김은실, 앞의 글, 92쪽

36) 김상구, 유림운동오십년사(1997), 도서출판 흥경, 178쪽-184쪽

총본부 명의로 가족법수호궐기대회를 열었고, “동성동본금혼법 수호 범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86.4.에는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여성유도회 명의로 동성동본결혼을 허용하고, 호주제 폐지를 지향하는 가족법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종전보다 가일충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족법 개정저지 범국민 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³⁷⁾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불헌규정 위헌결정사건(1997.7.16. 선고 95헌가6부터 13 결정)에서 유림은 ‘성균관가족법개정대책위원회’ 명의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유림의 실체와 성격이 무엇이며, 과연 유림이 내세우는 전통과 미풍양 속의 논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어떠한 논거에서 유림의 명분을 비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유림의 형성과 이데올로기적 성격

현재 유림으로 구분되는 범위는 재단법인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중앙회, 시·도본부 및 지부), 전국 시·도 향교재단, 청년유도회, 여성유도회 등의 단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집단이라 할 것인데³⁸⁾, 그 구성원 수가 얼마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³⁹⁾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탄압을 받았던 유림전통의 복원과 재건은 1946. 봄 전국유림대회를 계기로 유도회총본부가 결성되고, 재단법인 성균관의 설립과 성균관대학의 출범으로 전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해서 복원된 유림의 정신사적 맥락은 한말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고 일제하에서 항일독립운동에까지 명맥을 이었던 구한말 유교에 닿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정척사의 구한말 유교의 세계관은 전통적인 華夷론적 세계관으로서, 華로서의 중국과 小華인 조선을 제외하고는 夷에 불과한 일본⁴⁰⁾에 대하여는 倭洋일체의 논리로 침략에 저항하는 항일정신으로 승계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기본적으로 봉건제수호의 입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고, 근대지향적 발전의 방향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객관적으로는 당시에도 시대에 역행하는 수구적이고 완고한 이데올로기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⁴¹⁾ 즉, 위정척사의 반개화적 유교의 세계관은 이미 근대화로의 개국을 눈앞에 둔 당시 100여 년 전의 시대상황 하에서도 그 선명하고 비타협적인 반침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시대역행적인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유림에서 동성동본불혼이나 호주제폐지에 관하여 가족법개악반대의견으로 제시하는

37) 김상구, 앞의 책, 185쪽-190쪽

38) 김상구, 앞의 책 293쪽 이하 부록 참조

39) 동성동본불혼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에서는 1,000만 유림이라는 표현이 있고, 1981.7. 당시 법수호궐 기사에는 800만 유림이라는 표현이 있으며(김상구, 앞의 책, 186쪽), 한편 1975년 2월 당시의 정부에 대한 건의서에는 500만 유림이라는 표현이 있다(김상구, 앞의 책 204쪽).

40) 한길사, 한국사 11, 근대민족의 형성-1(1994), 62쪽

41) 한길사, 앞의 책, 91 · 97쪽; 강재언, 한국의 개화사상(1981), 비봉출판사, 260 · 261쪽

논거로는 민족문화와 전통의 재창조⁴²⁾, 전통을 토대로 만들어진 예절과 법도로서의 호주상속 제⁴³⁾, 한민족의 전통과 윤리관에 입각한 미풍양속인 가정제도의 수호와 고유문화의 창달⁴⁴⁾ 정도로서, 결국 민족전통문화로서 현재에도 미풍양속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요약될 수 있다. 구한말 이전의, 또한 일제하의 천황제 파시즘의 영향으로 왜곡된 형태의 과거의 전통이 현대 자본주의적 사회상황에서 어떻게 하여 여전히 유효하게 미풍양속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역사적 논리적 연결점의 해명은 전혀 없이 과거 유교적 세계관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복고주의적인 항변을 담습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이기에 앞서 고착된 고정관념의 표출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은 비판에 의하여 유교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다 하겠다. 현재의 유림이 구한말의 봉건제적 세계관의 한계를 지닌 전통의 복원으로서의 복고주의의 수준에 머물러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한국유교는 실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자주적 개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개화사상과 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갑신정변에서의 14개조 정강에는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라는 근대적 인권론의 평등사상이 표현되고, 이와 관련한 박영효의 ‘국정개혁에 관한 건백서’에서는 “하늘이 生民을 내림에 억조창생이 모두 동일하였고 民이 천생으로 태고난 것에 움직일 수 없는 通義가 있었는데 그 통의(근본원칙)라는 것은, 사람이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고, 자유를 요구하고,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천부인권과 평등사상이 표현되어 있다.⁴⁵⁾ 개화운동의 제2단계로 평가되는 독립협회운동에서는 근대국민국가의 완성을 지향한 합법적인 정치결사로서의 성격을 선명히 하였고, 인민평등사상을 바탕으로 봉격적 계층성을 타파하고 국문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⁴⁶⁾

3. 유림의 호주제존속논거와 법리적 비판

유림의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로서의 존속논거가 민족전통문화로서 현재에도 미풍양속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요약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양성평등에 반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반대를 넘어서 법리론적 비판을 구성하여 볼 필요도 있다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불혼위헌결정에서 제출된 유림의견서에는 동성동본불혼은 기본권제한의 정당한 이유로서 공서양속에 해당한다는 논의가 보이거나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대의견은 바로 이점에서 “혼인 관계는 남녀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합이지만..국가 · 사회의 기본 구성요소인 가족을 형성하는

42) 1975.7. 가족제도개악법안 반대투쟁선언 중에서

43) 1975년도 제도개정법률안 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취지문

44) “가정제도 개정 법률안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 규약 제3조(목적)

45) 강재언, 앞의 책, 223-224쪽

46) 강재언, 앞의 책, 228-229쪽

지극히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회고유의 전통·풍속에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관습으로 이어온 금지흔의 범위를 범으로 명확히 하여 혼인관계의 유·무효를 명백히 함이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말하자면,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론으로서 전통을 미풍양속으로서의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논리이고, 호주제 폐지에 관하여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호주제가 미풍양속으로서 위 37조 제2항의 일반적 제한원리인 질서유지에 해당할 수 있는가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질서유지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기본권 제한론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헌법학상으로도 통일된 의견이 없고, 심도 있는 논리의 전개도 찾기 어렵다. 질서유지의 개념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고,⁴⁷⁾ 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의 존재목적이므로 국가안전보장의 예에 포함되고 그 외의 타인의 권리질서, 도덕질서유지, 사회의 공공질서유지 등의 사회질서가 질서유지개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⁴⁸⁾ 나아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이 국가안전보장이며, 국가안전보장은 질서유지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⁴⁹⁾

어떠한 논리를 취하든 우선 헌법의 가족제도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한다고 하면, 질서유지의 원리로서 호주제도의 존립을 내세우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여 양립할 수 없는 논리라 할 것이다. 또한 호주제도가 기본적 인권-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제도화라고 하면, 이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호주제도가 질서유지에 해당하는 미풍양속에는 해당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⁵⁰⁾ 민주적 기본질서이든 아니든간에 헌법의 기본권제한원리로서의 질서유지의 질서란,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이의형량에 의하여 이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 이지, 제한원리로서의 질서의 개념이 인권에 반하는 것일 수는 없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핵심요소로 하는 헌법질서는 모든 사회질서의 상위개념이며, 어떠한 사회질서, 도덕질서도 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전통을 앞세운 미풍양속론에 대하여는 보다 정교한 질서의 개념을 전개하여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VI.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전략

47) 김철수, 앞의 책, 106쪽

48) 최대권, 앞의 책, 202-203쪽; 박규하, '근대헌법에 있어서의 기본권보장의 유형과 기본권의 제한',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금랑김철수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영사(1998), 328쪽

49) 박규하, 앞의 글, 327쪽에서 재인용(김기범, *한국헌법*, 1974, 138쪽)

50) 곽동현, 앞의 글, 72-73쪽

1. 소송제기의 의미

호주제도 폐지는 궁극적으로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현재 호주제도를 유지하게 하는 민법, 호적법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또는 국회가 스스로 호주제 관련조항의 개폐를 위한 의안을 국회에 부의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1) 부계혈통주의의 관습이 그 어떤 제도보다 오래 전부터 뿐리깊이 지속되어 왔고, 2) 1990년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과거 호주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대부분 폐지됨으로써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호주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어려우며, 3)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대항세력을 기존의 유림 등 사회 일부가 아닌 남성 전반으로 보아야 하고, 4)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동성동본금혼규정이 무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가 관련규정을 개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다른 전략을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한 입법운동은 그 결실을 언제 보게될지 전망하기 어렵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부장적인 부계혈통주의의 토대인 가(家)가 해체되고, 이에 따라 신분과 주거관계를 공적으로 기록, 증명하고 있는 현재의 호적제도, 나아가 주민등록제도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므로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커 상대적으로 쉽게 바꾸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폐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입법운동을 효과적으로 펼치기가 쉽지 않다.

앞서 예를 든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과거 상식적으로 명백히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테다가 그런 입법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전면적인 폐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10년마다 한시적으로 1년간씩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는 기이한 형태의 특별법만 3회 의결한 예가 부계혈통주의와 가부장제의 벽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두터운지 증명해 준다. 따라서 동성동본금혼에 대한 경우처럼 호주제도에 대해서도 입법운동의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소송제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장점으로는 앞서 언급한 입법운동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 외에, 1) 소제기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2) 소송은 가부장제에 반드시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어 뚜렷한 목표를 정할 수 있으며, 3) 분산되어 있는 여론을 재판이라는 공개된 싸움의 장으로 모을 수 있고, 4) 재판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여론조성이 가능하며, 5) 헌법소송의 경우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호주제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밖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호주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소송제기 전략이 꼭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개폐되어야 할 문제조항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문제조항은 민법, 호적법의 경우 다음과 같다(이밖에 국제 결혼한 부부간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해서 남편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규정한 섭외사법의 규정등 호주제도와 연관된 문제 법규는 편의상 여기에 열거하지 않음).

가. 민법

· 778조(호주의 정의)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 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1항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

· 784조(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① 처가 부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826조(부부간의 의무) 3항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 984조(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
-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 3) 피승계인의 처
-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나. 호적법

· 8조(호적의 편제)

호적은 시,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이를 편제한다.

· 15조(호적의 기재사항)

호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본적
- 2)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의 관계
- 3)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 변동 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 4) 호주 및 가족의 성명, 본, 성별,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5)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연월일
- 6)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 7) 호주와 가족과의 관계
- 8) 타가에서 입적하거나 타가로 떠난 자에 대하여는 그 타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 9)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49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2항

(출생)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 2) 자의 혼인 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4) 부모의 성명 및 본
-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원인과 장소

· 76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1항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의 연월일 및 본적
- 2)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 4) 처가에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 5) 당사자가 초혼이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연월일
- 6)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 7) 여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 96조(호주승계신고)

- ①호주승계의 신고는 호주승계인이 승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호주승계의 원인 및 호주가 된 연월일
 - 2)전호주의 성명 및 전호주와 호주와의 관계
 - 3)호주승계인이 전호주와 본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본적의 표시
 - 4)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한 때에는 그 취지와 포기자의 성명 및 본적

· 96조의 2(호주승계권 포기 신고)

- ①호주승계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1)호주승계 개시의 원인과 연월일
 - 2)전호주의 성명 및 전호주와의 관계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 1)이미 호주승계신고를 한 때
 - 2)호주승계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
(민법 991조 :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3. 소제기의 대상과 절차

가. 신고불수리처분과 불복의 소제기

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은 호주제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 항기재의 민법규정과 그 하위 절차법인 호적법이다. 민법의 호주제 관련 규정이 개폐되면 호적법의 관련 조항은 당연히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호적부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일반적으로 호적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를 통하여 기록된다. 호적 당국은 신고 내용을 심사하여 법규에 어긋나는 때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호적법 46조), 이 불수리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호적법 125조).

호주제도의 경우 예컨대 가족을 이루게 되는 혼인 남녀가 본적지의 호적 당국에 부(夫)를 호주로 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적법하게 수리되어 일가의 호적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처를 호주로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부부 공동을 호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호적당국에 의하여 신고서가 불수리 될 것이다. 또 출생신고시 자의 성을 부모 공동의 성 또는 모의 성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역시 수리거부될 것이다. 이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의 신청이 바로 소송 제기의 핵심적인 절차가 된다.

구체적으로 소송절차를 단계적으로 약술하면, 1)원고(신청인)는 민법과 호적법이 규

정하고 있는 호주제도에 모순되는 관련신고를 한다, 2)호적당국의 불수리처분, 3)불수리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의 소를 제기하는 3단계 절차가 최초의 소제기 절차이다(참고로 동성동본금혼 소송의 경우도 1)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 2)호적당국의 불수리처분 3)불수리처분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의 소를 제기하는 3단계 절차를 밟았음).

나. 위헌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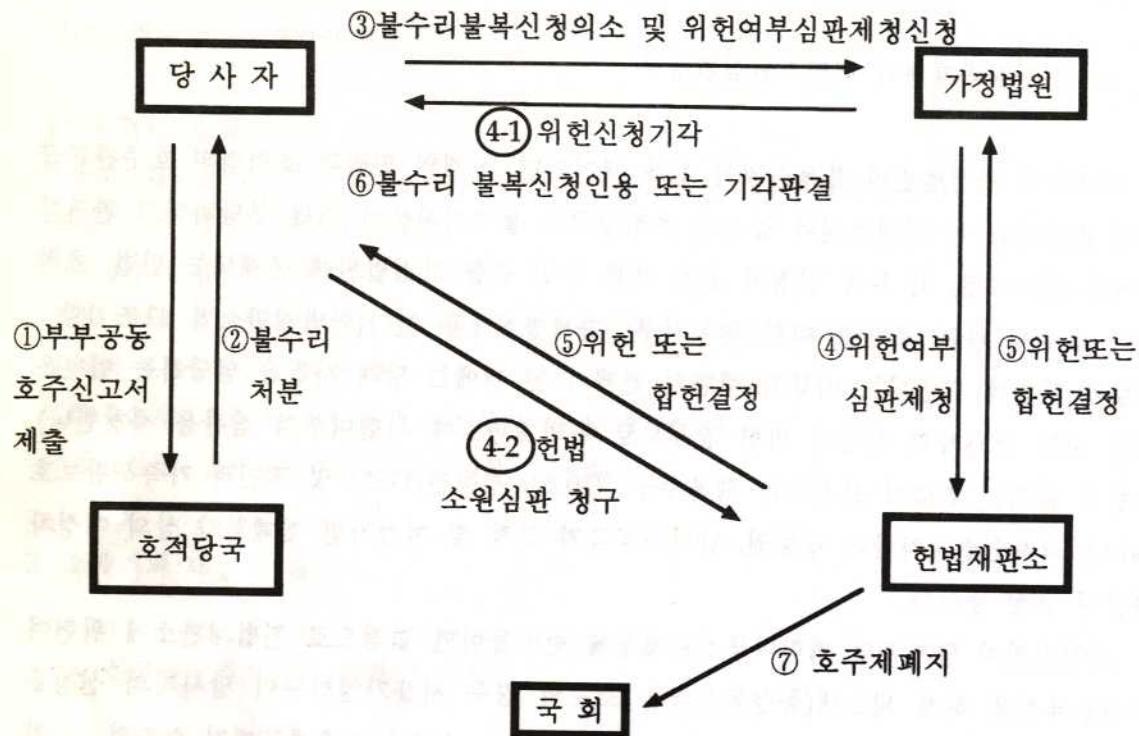
다음으로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의 소가 제기되면, 현재의 민법과 호적법의 호주관련 규정이 존속하는 한 가정법원이 앞서의 호적당국의 불수리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불복 신청의 소가 계류 중인 관할 가정법원에 문제되는 민법, 호적법의 호주제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헌법재판소법 41조 1항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위헌의 근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10조), 평등권(11조) 및 혼인과 가족생활보호(36조), 국제인권규약상의 평등권, 남녀차별금지 규정 및 여성차별 철폐협약 상의 여성차별금지 규정 등이다.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받아들이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게 되는데(동성동본금혼 소송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음), 이것이 호주제도폐지 소송의 1차적인 목표이다. 가정법원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은 곧 법원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을 뜻하므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가정법원이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인 원고(신청인)가 직접 호주제 관련 법규의 위헌 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 제 4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의 제정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든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든 호주제도의 위헌여부는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가 민법, 호적법의 호주제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선언하게 되면, 그에 따른 호주제 폐지 입법이 있든 없든 호주제는 종언을 고하게 되고, 소송의 목적 또한 달성한다.

4. 소송 전략

가. 이상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절차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편의상 호주를 부가 아닌 부부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나. 소송물의 유형

현재의 호주제도와 모순되게 호적당국에 신고를 하고 호적당국이 이에 대하여 불수리처분을 함으로써 소제기가 이론상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호주·신고 관련

- ① 혼인신고시 호주란을 공란으로 신고
- ② 혼인신고시 부부공동으로 또는 처를 호주로 신고
- ③ 현재 부(夫)로 되어 있는 호주를 부부 공동 또는 처로 변경 신고

(2) 자(子)의 성 신고 관련

- ① 자의 출생신고시 부(父)의 성 아닌 부모공동의 성 또는 모(母)의 성으로

자의 성을 신고

② 자의 성을 부모 공동의 성 또는 모의 성,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계부의 성으로 변경 신고

(3) 혼인외 자의 입적 관련

처가 부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의 입적 신고시 부의 동의 없이 입적 신고

(4) 자의 전적(轉籍) 관련

처가 이혼후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자의 호적을 처의 친가 또는 처의 창립일가로 전적신고

(5) 호주승계권 포기 관련

부 사망후 호주승계신고를 한 자의 호주승계권 포기 신고

이상의 소송물 유형 중 호주제 폐지에 직결되는 형태는 1)호주신고와 관련되는 3가지 유형과 2)자의 성 신고와 관련되는 2가지 유형의 소송이다. 어느 것이나 앞서 예시한 호적당국의 불수리처분에서부터 헌법소원심판청구까지 이어진다. 다만 위 유형 중 4), 5)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로부터 보다 넓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소송수행 행위는 최초 당사자 선정시부터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 훌륭한 팀워크,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는 소송개시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중간에 소취하를 해서는 안된다(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수는 많을수록,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된다).

(2) 호주제 폐지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의 변호인단이 조직되어야 한다.

(3) 당사자 선정 및 변호인단 구성을 기획, 지원하는 소송 전략팀이 구성되어 최초 소제기시부터 마지막 종결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관리, 소송비용 등 각종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4) 소제기 당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소송전략팀의 지휘하에 다양한 시민단체, 법률가단체, 학계 및 개인들이 동원되어 지속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홍보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가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동조의견을 보내야 한다.

(5) 소송이 제기되면, 1차적으로 가정법원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2차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목표로 한다.

(6)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의 제소단계서부터 위 4)항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7) 호주제 폐지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의 구두변론에 철저히 대비하고, 동 변론에 현출할 수 있도록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전달할 참고인 선정을 꼭넓게 준비한다(동성동본금흔 소송의 경우 법학계, 시민단체, 의학계에서 1인씩 청구인 즉 참고인으로 선정되었음).

5. 유엔 인권이사회에의 제소

한국은 1990년 유엔의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편의상 자유권규약이라 약칭함)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은 당해 국가의 법규가 자유권규약에 위배됨을 이유로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다만 동 제소전에 모든 국내법상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은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으므로 호주제 폐지 소송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하면, 결국 모든 구제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어서 자유권규약 3조("당사국은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및 26조("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관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적, 사회적 출신성분, 재산 정도, 가문 또는 기타 지위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하여 평등하고 유효한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가 규정하는 남녀 차별금지조항 위배를 근거로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정보는 1999년 10월 2차 정기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9년 11월 1일 한국정부에 대하여 자유권규약 3조, 26조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고 사항을 결의하였다.

"이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강화시키는 법률과 관행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 특히, 호주제는 여성의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 태아성감별 관행, 둘째와 셋째로 태어나는 아동 중에 남아의 불균형한 비율, 위험한 낙태가 명백히 초래한 높은 모성사망률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사회는 남녀가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들을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규약 3조와 26조-

를 이행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가 전박적인 사회적 태도로 인해 정다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 결의사항을 고려하면, 장래 유엔 인권이사회에 호주제 폐지 문제를 제소할 경우 현재의 호주제도를 자유권규약 위배로 판정할 가능성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VII. 맷는 말

이 글에서는 호주제도의 위헌론으로서 양성평등위반은 물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인간의 존엄에 반하고, "호주" 개념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하는데 치중하였다. 이 글의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첫째로, 호주제도가 봉건적 유교이데올로기와 파시즘의 결합으로서의 본질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착기인 일제식민지시대는 물론, 분단시대의 남한정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권위주의적 정권유지에 부합하는 제도로서 유지, 고착, 악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근대적 산업화의 과정에서도 정치권력은 남성노동자의 소외와 억압의 통제, 여성노동자의 성차별적 저임금 산업노동력의 집단적 동원에도 가부장제적 가족이데올로기는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가족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호주제도의 폐지는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봉건적 유교 이데올로기-반공주의-파시즘적 정치권력의 결합관계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하지는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호주제도가 한국 가족제도의 기본형태로서, 위와 같은 부정적 이데올로기의 결합체로서의 기능을 하여왔다는 점이 향후 체계적으로 연구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전략으로 헌법재판소에의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위헌결정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소송전략과 관련하여서는 당장 실천을 위한 주체의 구성과 구체적 방법들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호주제폐지 후의 대안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세가지 제도; 가족별 호적의 편제방법, 주민등록제도와의 일원화, 1인1적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매우 아쉬운 일이다. 특히 1960년대 박정희정권 시대에 설치된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한 호적제도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추후 필요하고, 여력이 있다면, 이 점을 보완하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1. 강재언, 한국의 개화사상(1981), 비봉출판사
2. 곽동현, '호주제도에 관한 연구'(1979.2)

3. 김동춘, *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1997)*
3. 김병곤, *인간의 존엄, 교육과학사(1996)*
4. 김상구, *유림운동오십년사(1997)*, 도서출판 흥경
5.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1999년 가을 통권 8호)*, (주) 도서출판 삼인
6.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1997)
7. 박규하, '근대헌법에 있어서의 기본권보장의 유형과 기본권의 제한',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금랑 김철수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영사(1998)
8.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1987)*
9. 백운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헌법실천', *헌법해석과 헌법실천(민주주의법학연구회편)*, 도서출판 관악사(1997.6.)
10. 법무부 간,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1)-민사관계법-*, (1992)
11. 양현아, '한국의 호주제도', *여성과 사회(제10호/1999)*, 창작과 비평사
12. 이상욱, '일제하 전통가족법의 왜곡',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 교수 환갑기념논총 발간 위원회 편)*, 박영사(1991)
13.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6)
14.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인권과 정의(통권 81호/1982.10)*, 대한변호사협회
15.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1998)
16.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주)나남출판(1998)
17.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18. 한길사, *한국사 11, 근대민족의 형성-1(1994)*
19. 한상범, '한국에서 서양근대법 수용과 봉건이데올로기와의 갈등', *헌법학과 법학의 제문제(허 경 외 편)*, 박영사(1996)
20.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1995)
21. 井上 清, *日本の歴史(일본의 역사, 서동만 옮김)*, 도서출판 이론과 실천(1989)
22. 丸山眞男,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김석근 옮김)*, 한길사(1997)

에바다 사태의 전개 과정과 전망

권오일(에바다학교 교사)

I. 발생 원인

1. 사태 개요

96년 11월 27일 새벽 5시 경기도 평택의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학교, 농아원, 복지관)에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린 농아원생들이 기습적인 농성을 시작하여 2000년 2월 15일 현재 1190일을 넘기고 있다.

춥고 배고프고 강제노역에 시달린 것이 농성의 근본적인 이유였다. 에바다는 농아 어린이 70여명의 인신매매, 사망·실종·변사체 발견, 국고 횡령, 친인척으로 구성된 유령직원 15명, 주민등록증과 장애인수첩 2종 발급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투성이였다. 뿐만 아니라 비리재단 최씨일가는 주한미군 성추행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합의금을 매번 받아챙기기도 하였다.

에바다 사태는 5백여회 이상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2년 연속 국정감사를 받았으며 경찰수사와 감사원 특별감사, 김대중 대통령의 세 번에 걸친 해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비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 사태 이전의 상황

에바다복지회의 비리 문제로 인한 농성은 96년 11월 27일 이전에도 5차례가 더 있었다. 학생 3차례, 농아원 보육사 1차례, 학교 교사 1차례이며 이번 농성은 6번째이다. 특히 90.12. 농아원 보육사 11명의 농성이 발생했을 때 당시 이사장 최성창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느끼자 무릎꿇고 앓아 울면서 반성한다고 하며 고소취하를 호소했는데 이를 측은하게 여긴 보육사들은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고, 최성창은 바로 다음날 보육사 11명 모두를 해고하는 악랄함을 보였다.

89년에 있었던 학교 교사들의 집단농성은 교사들의 봉급에서 십일조를 원천징수하는 부당함과 열악한 교육환경, 극심한 교권침해에 맞서 싸운 것이었다.

3. 사태 당시의 상황

96.11.27 에바다의 6번째 농성이 발생했던 당시 학교, 농아원, 복지관 등 법인 소속 모든 시설에 대하여 최실자(당시 원장, 관장, 서무과장, 상임이사 겸직)의 안하무인적인 행동은 극에 달해 있었다.

가.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며 열토당토 않은 내용을 조작하는 등으로 21명의 교사 중 9명의 교사들에게 사직서, 시말서를 강요했다. 또한 교육환경의 부실 등으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매일 모여서 불만을 토로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단측과 다투다 비밀리에 재단 퇴진 서명을 해가는 상황이었다.

나.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은 96.5.경 이미 7명의 직원을 무더기 해고 시키고도 10월 이후 10명의 직원들에게 다시 사직을 강요하는 등으로 횡포를 부려 직원 뿐 아니라 학부모들 수십명이 퇴진 서명을 하는 등 그 반발이 매우 강했다.

다. 농아원의 경우는 90.12.에 있었던 보육사들의 집단농성으로 인하여 위기의식을 느낀 재단측에서 보육사 11명 모두를 해고시킨 이후 최씨일가의 꼭두각시화를 위해 보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지 않고 에바다학교 졸업생 농아인 중에서 보육사를 채용했다. 간혹 건청인이 보육사로 근무하기도 했으나 조금이라도 눈에 벗어나면 스캔들을 조작하고 협박하여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만둘 수 밖에 없도록 하여 쫓아내기도 했다. 따라서 90.12. 이후 농아원 직원들의 집단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나 대신 원생들이 비인간적 대우에 견디다 못해 비리재단에 항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II. 사태의 발생과 전개 과정

1. 농성의 시작

96.11.27 새벽 5시 어린 농아 학생들이 비인간적인 대우에 맞서 항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5분 만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들의 가슴에 권총을 들이대고 몽둥이와 군화발로 집중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그리고 26명의 학생이 연행당하여 23명이 다치고 3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 연대 과정

가. 내부적 연대

교사들은 학교에 출근한 후에야 학생들의 농성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로부터 농성을 하게 된 계기와 재단의 비리 내용, 경찰의 만행을 전해들은 교사들은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제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학부모, 복지관 교사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나. 대외적 연대

(1) 사태 초기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평택의 시민단체, 노동단체들에 대해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을 접하면서 지역의 단체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적극적인 연대를 해왔고, 그동안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토론회·기자회견,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찾집 등 많은 활동을 했다.

(2) 그러나 지역 권력층의 집요한 각개격파식(?) 의해 공작에 상당 부분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농성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은 재단측의 테러를 피해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97.1.10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농아인협회 지하 콘크리트 바닥에서 5개월여 동안을 스티로폼 한 장에 몸을 의지한 채 힘겨운 농성을 계속 이어갔다.

이때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장애인 권리수호 및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4) 97.6.2 서울에서의 농성을 접고 학교로 귀교하면서 현재의 해아래집에 거처를 마련하여 농성과 일상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때는 이미 기존의 지역 대책위가 거의 와해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태 초기부터 대책위 의장이었던 김용한 박사와 민주노총 등 10여개의 지역 단체들이 조직을 추스려 현재의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새로이 꾸려지게 되었다.

(5) 새로운 공대위의 구성 시기에 농아원생 최미선양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여 알몸의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공대위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공대위는 97년 겨울 4개월여에 걸친 평택역 광장 천막농성, 김선기 평택시장 자민련 입당 저지를 위한 자민련 당사 앞 천막농성, 2개월에 걸친 경찰서 앞 정기 집회 등을 거치면서 에바다 사태 해결 투쟁의 선봉에 서왔다.

(6) 대학생 연대 조직

97.12.에 시작된 평택역 무기한 천막농성에 결합하기 시작한 전국 특수교육과 대학생 연합(전특련) 소속 학생들을 중심으로 각 대학 동아리,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이 대학생 조직을 만들어 현재의 '전국 에바다 대학생 연대회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 대학생 연대회의는 에바다 투쟁의 가장 든든한 동원력과 가장 강도높은 투쟁력을 자랑한다.

(7) 중앙 단체들의 연대 조직

99.7. 대학생 연대회의의 명동성당 천막농성을 계기로 인권운동 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이 주축이 되어 33개의 제단체들이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에바다를 전국적인 사안으로 인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3. 투쟁 과정에서의 무법천지 에바다

가. 에바다의 최씨일가는 비리 재단에 반대하는 11명의 교사들에 대하여 온갖 혐의를 조작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파면, 해임, 직위해제 등을 일삼았다. 또한 농성사주 등의 혐의를 들어 이들 교사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나. 비리재단측에서는 처음에는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교사들에게 폭행을 가했으나 이것이 문제가 되자 원생(학생)들을 세뇌시켜 교사들을 폭행하게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1) 임신 9개월, 6개월의 여교사를 교문 밖으로 끌어내거나 폭행하여 실신시킴.
 (2) 수업 중에 문을 잠그고 온몸에 밀가루 풀을 뒤집어 써우고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아 교실 벽에 쳐박음.

(3) 커피포트의 페퍼 끓는 물을 여교사의 목덜미에 쏟아부음.
 (4) 교사들에게 물풍선, 똥오줌을 퍼부음.

(5) 이러한 폭행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음.

(6) 학교의 교문이 재단층 학생들에 의해 수시로 폐쇄되어 몇 개월 동안이나 교사·학생들의 출근·등교가 저지당함.

위 내용들은 그동안 일어났던 폭력 사태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반재단층 교사들은 공식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97년 학교일지에 그 모든 내용을 기록했는데 교장이 최씨일 가의 꼭두각시인 상황에서 무척 힘든 싸움이었다.

4. 언론보도 및 각종 감사

가. 언론보도 상황
 TV, 라디오, 각종 신문 등 500여 차례 이상 보도

나. 각종 감사

(1) 국회 국정감사 2회(97년, 98년) 실시

(2) 감사원 특별감사 실시(98.2.5~2.25)

(3) 경기도의회 감사

(4) 기타 경찰과 평택시청, 경기도청의 수사 및 감사

다. 김대중 대통령의 3차례 약속

(1) 96.12.21 강남 YMCA 강당에서의 강연회 때 약속(야당 총재 시절)

(2) 97.12.경 송탄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사님들과의 간담회 때 약속(대통령 후보 시절)

(3) 98.5.10 제2차 국민과의 대화 때 약속

III. 에바다 투쟁의 의의 및 전망

1. 의의

장애인 및 사회복지 시설의 비리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러한 시설의 사정을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일반화 되어 있는'이라는 말을 붙이곤 한다. 이 '상식화' 또는 '일반화'라는 말이 어렵지 않게 함께 쓰이는 시설비리 문제는 역설적으로 그것의 근본

적인 해결이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금은 어두운 전망을 갖게 한다.

이러한 장애인 및 사회복지 시설의 비리가 상식화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크게 다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자질 문제이고,

둘째는 장애인 시설의 운영 및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임방기 때문이다.

시설비리 문제는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해서 덮어둘 문제도,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결코 아니다.

수많은 시설 장애인들의 고통과 인권침해로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국가의 책임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에바다 사태는 단순한 평택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장애인 복지 시설의 고질적인 문제임을 인식할 때만이 그 해결이 가능하다.

에바다 사태는 이땅의 400만 장애인과 전국의 장애인 수용 시설에 대한 복지정책의 문제점 뿐 아니라 감독관청과 공무원들의 비리사슬 의혹 등으로 장애인들은 항상 불이익이 당연시되고 시설장들은 어떤 비리에도 불사조처럼 쓰러지지 않고 더 공고한 입지를 갖게 되는 악순환의 상황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에바다 사태의 철저한 해결은 상식화된 시설 비리 척결과 진정한 장애인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한 비리사슬에 얹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할 공무원들이 칼날을 거꾸로 장애인에게 들이대고 비리원흉들을 위해 행정을 하는 일부 공무원들에게도 일벌백계의 결과를 가져와 공무원 사회의 도덕성 회복과 기강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2. 전망

사람들은 흔히 에바다 싸움을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한다. 그만큼 이 문제는 간단한 사안으로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패 고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바뀌어야 하고 시설운영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적 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5천만 국민 모두가 장애인 내지는 예비장애인이다.

곧 장애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러한 법·제도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 없이는 에바다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싸움의 끈을 이어가야 그나마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승리하여 시설 비리가 척결되고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이 보호받는 참 좋은 세상이 오리라 확신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정당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

고 끝까지 싸워 나간다면 이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희망을 부여안고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힘차게 투쟁한다.

평화운동과 인권 - 여성평화운동의 관점에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교육위원)

I. 평화운동과 인권: 한국에서, 아직은 낯선 만남

1. 지금까지의 평화운동의 기반 : 두려움(?)

지난해 8월 13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에서 주관한 “한반도의 냉전 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네덜란드의 평화운동단체인 ENNAT(European Network Against Arms Trade)의 마틴 브뢰(Martin Broek)은 과거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반을 휩쓴 유럽의 반핵평화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서구 평화운동의 안보논쟁은 상당한 변화를 맞이했다. 서유럽의 80년대 평화운동은 대체로 공포(fear)에 의지하여 사람들을 움직였다. 두 블록간의 불안정한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평화운동의 주요 동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소된 후에는 이러한 운동이 많은 지지자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¹⁾

공포에 기초하여 움직였던 80년대 유럽의 대규모 반핵평화운동은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을 목격하면서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았다. 그 동안 평화운동은 한편은 핵무기에 대한 반대라는 출발점으로부터 일을 해나가고, 한편은 전반적인 반군사주의로 확장시켜 나갔다. 그러나 출발점은 공통적으로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냉전 후 소규모의, 그러나 더욱더 그 양상이 다양하고 참혹해진 국지전, 민족분쟁이 끝이 보지이 않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과거의 평화운동 진영보다는 개발기구와 인권기구들에 의해서 새로운 평화활동의 계획이 세워지고, 이것이 평화운동의 새로운 주류가 되고 있다고 한다. 즉 이들 기구들은 종종 중재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분쟁지역에서 기초수준의 활동을 벌였으며,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문제를 이슈로 삼고, 재난구호의 수준을 높였으며, 이에 대한 군사분야의 가능한 역할을 논의했으며, 소규모 군비와 지뢰를 줄이는데 성공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²⁾

냉전 이후의 국제평화운동이 개발기구와 인권기구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냉전 이후 크고 작은 무력갈등의 양상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즉 탈냉전 이후의 무력갈등이

1) Martin Broek, ‘평화운동의 발전과 미래’ (한반도 냉전 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자료집),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1999), 41쪽.

2) 앞의 글, 42쪽.

주로 국내적 차원의 종족·종교 분쟁들의 양상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사용되는 무기도 이동이 용이하면서도 치명적인 소형무기로 바뀌면서 공격의 대상이 무장병력보다는 시민으로 바뀌고 있다. 그 결과 무력분쟁지의 시민들은 무력갈등에 의한 폭력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적 안전보장조차 받지 못하여 사상자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리하여 과거 무력분쟁에서 “부차적 피해자”였던 시민은 현대전의 “진양지”로 던져지게 되었다.³⁾ 한편 가속화되는 지구화 현상 속에서 세계의 시민들은 시장개방, 세계무역, 통신혁명 등을 통해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이를 통해 스며드는 각종 위협과 오염물질과 전염병 등에 과거에 비해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었다. 냉전 이후 개별 국가의 안보는 향상되었지만 그 안의 시민의 삶의 조건과 절은 더욱 열악해 지면서 새로운 안보개념, 즉 “인간안보human security, people-centered security” 개념⁴⁾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특히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그 내용이 포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작년에 100년 만에 다시 열린 헤이그 평화회의(The Hague Appeal for Peace)의 표어가 “Peace is a human right(평화는 인권이다)”였다. 평화의 보장이 인권확보에 필연적이라는 것인데, 21세기에는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이 교차되면서 전개될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과거 유럽의 평화운동이 “공포”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움직였다면, 지금까지 한국의 평화운동은 어디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움직여 내려고 노력해 왔는가? 냉전 이후 평화운동의 양상이 개발기구와 인권기구에 의해 인간안보의 관점에 의해서 새로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 현재 한국에서 평화운동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에서는 여성평화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운동과 인권이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서 평화운동의 일상화에 대해 논의하고, 다시 인권·평화 등 보편적 가치로의 운동의 확대 등에 대한 관심사를 논하고자 한다.

2. 한국의 평화운동 : 초기단계

한국에서 평화운동을 처음으로 전개한 곳은 기독교 진영일 것이다. 지난 1980년대 중

3) Lloyd Axworthy, 'Human Security:Safety for People in a Changing World', (April 1999).

4) “인간안보”的 개념을 다음을 포괄한다. ①안보의 척도로서 ‘국가’보다는 인간 개인과 이들의 공동체를 받아들인다; ②‘국가안보(State Security)’는 필수적이지만 개인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치 못하다고 인식한다; ③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것(국가내부의 전쟁, 소형무기의 유포, 인권침해, 범죄와 마약 등)도 위협으로 간주한다; ④개인의 안전과 안녕을 지구적 안보의 총체성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⑤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대체하지는 않으며 보완한다; ⑥외교의 영역에 새로운 수단(즉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정부와 비정부기구, 국제비정부기구간의 연맹 등)을 받아들인다. Paul Heinbecker, 'Human Security,' Peace Magazine(99.7.) <http://www.peacemazine.org>.

반 이후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평화운동을 목격하고 참여하기도 했던 기독교인 학자들은 “평화”라는 개념을 한국에 수입했다. 당시까지도 “평화”란 한국사회에서 지극히 생소한 개념이었고, 선통일 후민주, 혹은 후민주 선통일 등의 논쟁이 막 진행되기 시작된 때였다. 유럽의 반핵평화운동을 소개하는 데 기여한 이삼열 송실대 교수에 의하면, 당시 서독의 수도 본에 20-30만의 대규모 군중이 모여 유럽에 핵미사일 배치반대를 외치는 것을 보면서, “평화도 운동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한다.

한국에 평화운동이 소개되기는 했지만, 전쟁과 분단의 경험, 오랜 군사독재와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 평화의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던 한국사회에서 운동으로 발전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특히 ‘평화’하면 ‘비폭력’이라는 것과 연결되면서 저항감도 많았는데, 그 이유는 ‘비폭력’주의가 서구에 의해서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과 관련되어 논의될 때 해방운동을 저지하고 미국 등 서구 중심의 현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에 의한 것이었다. 아무튼 “평화”는 처음에는 무척 거부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통일운동 진영에서도 ‘평화’에 대한 거부감은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통일운동은 운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실존적 결단까지 담보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들이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대개는 “남과 북은 하나다”라는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주의에 기초를 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은 남과 북의 결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⁵⁾라는 극단적 기계론적 사고까지 발전되기도 했기 때문에 “통일은 평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관점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했다.

평화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려는 그룹은 그러므로 “평화란 무엇인가”라는 보편적 개념 이해에 대한 소개부터 평화운동을 출발시켰다. 평화를 단순히 물리적 폭력과 전쟁의 부재로 보는 소극적 평화 이해를 탈피하고 적극적 관점에서 물리적 폭력과 전쟁을 근복적으로 낳게 하는 잠재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 Johan Galtung)의 극복을 포괄하는 적극적 평화개념이 소개되었다.⁶⁾

‘구조적 폭력’이란… 한 사회의 구조나 체제가 갖는 폭력성을 말하는데, 가령 한 노동자가 저임금의 구조 때문에 착취를 당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면, 그는 이 사회로부터 구조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땅이나 집이 없어서 끌주려 죽고, 영양실조로 죽게 되

5) ‘민주화의 길’ 편집부, “조국통일운동의 성격과 동력”, 「자료모음」5, 박성준, ‘1980년대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에 대한 고찰’, 회년신학과 통일회년운동(채수일 편), 한국신학연구소(1995), 461쪽에서 재인용.

6) 이삼열, ‘비판적 평화연구란 무엇인가’, 한반도평화론 (이호재 편), 법문사(1989).

는 수천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들이다. 평화가 '폭력의 부재상태'라고 했을 때, 폭력을 단순한 물리적, 육체적 폭력으로만 볼 때는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평화의 정의가 나오고, 폭력을 구조적인 폭력으로까지 확대해 본다면 "평화란 억압과 착취가 없고 인권과 사회정의가 보장된 사회에서만 존재한다"라는 적극적 평화개념으로 확대되고 연결된다고 한다.⁷⁾

구조적 폭력의 극복이란 측면의 적극적 평화이해로 평화의 개념이 "전쟁과 (물리적) 폭력의 반대"라는 이해를 넘어서서 관계의 정의라는 차원까지 포괄하게 되었고, 여기서 관계의 정의에 대한 이해는 주로 경제적 관계의 정의(경제적 분배의 정의)와 결부되어 과거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던 한국평화운동의 철학적 기반이 되어왔다. 여성평화운동에서도 이러한 이해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3. 한국의 여성평화운동 - 여성통일운동과의 관련하여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지난 1991년 5월부터 1993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개최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이다. 이는 남·북·일본의 여성들이 동경·서울·평양을 돌아가면서 위의 주제아래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남한의 민간운동에서는 최초의 남북교류라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한국측 실행위원회들은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이 세미나에 접근했다. 1991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 2차 토론회의 주제는 ①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②통일과 여성, ③ 평화와 여성 등이었는데,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부분의 한국측 발제자였던 조형교수는 분단 이후의 남한사회가 '군사문화'에 의해 왜곡되어 여성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었던 점⁸⁾을 지적하였고, '평화와 여성' 파트의 남한측 토론자로 나선 김윤옥 원장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등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70년대의 원폭피해자 돕기운동, 여성들의 방위비 삭감운동, 걸프전 반대운동, 평화교육운동 등을 남한의 여성평화운동으로 소개하였다.⁹⁾

다음 해 9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에서도 한국측 발제자들은 적극적 평화이해 속에 논의를 전개시켰다. 먼저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보충토론을 한 이효재 교수는 "민족대단결이 자주와 평화의 원칙을 가능케 해준다"라고 하면서, "평화의 원칙"은 통일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통일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7) 이삼열, 같은 글, 151쪽.

8) 조형,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보고집),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준비위원회(1991), 33-34쪽.

9) 김윤옥, '평화와 여성: 토론2', 위의 자료집, 62쪽

"고 주장했다.¹⁰⁾ 이어 이우정 전 국회의원은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의 기조보고에서 역시 구조적 폭력이 극복된 적극적 평화개념의 관점에서 남한의 여성단체들이 전개했던 여성평화한마당, 군사비 감축운동 등을 소개하였다.¹¹⁾

평양토론회를 통해서 남과 북의 여성들은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를 공동의 해결과제로 채택함으로써 주제과 관점에 있어서 남과 북의 여성들이 함께 여성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후 남북여성교류는 조-미 핵문제, 김일성 사후 조문파동으로 인한 긴장관계로 인해 일본에서 다시 한번 모인 후 교착관계에 빠지게 되었다. 한국의 여성평화운동도 역시 1994-5년 이후 약간의 침체기에 들어서게 된다.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와 함께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에서 집중하였던 중심주제가 바로 군축운동, 즉 방위비 삭감운동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하여 1991년부터 전개된 이 운동은 당시 국가예산의 25-30%를 차지하는 방위비 예산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예산이 약 5% 미만에 머무르는 점, 특히 여성복지 예산은 1993년의 경우 부녀복지비는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31%에 머무는 점(김성천 연구)¹²⁾에 경악한 여성들이 과도한 방위비를 줄여 사회복지, 여성복지, 교육, 경제분야에 투자할 것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전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방위비 삭감운동은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으로 발전하여(1992년 9월) 이후 국방비 삭감을 필요성을 알리는 편지보내기(8,000통)을 전개하고, 이후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 여성들의 모임」(1994년 2월)을 결성하여 무기수입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여성들이 평화군축운동을 여성복지와 관련시켜 '평화'라는 거대담론을 여성의 일상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와 접목시키려 했던 것은 여성평화운동의 새로운 시도 가운데 하나여서, 이 운동은 초기 일반여성단체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와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단순한 비교 이후, 국방비를 삭감할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삭감분을 여성복지로 환원시킬 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여전히 불안한 남북정세 외에도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많은 국민에게 국방비 삭감은 전쟁불안과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여성평화운동의 커다란 축이었던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한국실행위원회에 관여하던 단체들과 개인, 그리고 방위비 삭감운동에 참여했던 그룹이 모

10) 이효재, '민족대단결과 여성: 보충토론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 자료집),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1992), 16쪽.

11) 이우정,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위의 자료집, 47-49쪽.

12) 정현백, 강남식, '여성단체들의 통일의식과 통일사업에 관한 연구', ('여성들의 통일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의식 함양방안연구: 평화통일과 여성의 과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연구용역 자료집'),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1999), 179쪽.

여서 남북여성교류와 군축운동을 결합시켜 여성평화운동을 전개시키고자 결성한 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1997년3월)이다. 이 단체는 결성된 이후 군축운동과 북한여성돕기운동, 그리고 남북여성교류의 재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한사회의 평화운동의 지평의 확대를 위해 '평화교육'의 확대와 전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 그간의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시론적 평가

이상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간의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여성평화운동 전문단체로서 창립된 것은 분명히 여성평화운동의 한 단계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보다 전문적인 여성평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분리되어왔던 여성평화/통일운동의 역량이 결집됨으로써 보다 보다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여성평화운동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전문적 여성평화운동 단체의 성립이 한편 일반여성운동으로부터 여성평화운동을 분리시키는 결과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있다. 이는 운동의 세분화와 전문화 과정에서 여성평화운동의 내적 역량이 그 내용과 조직에 있어서 아직 일반여성운동 권에 함께 참여할 동기와 내용을 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평화운동 자체도 여전히 자체내의 전문화와 대중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반여성운동은 여성평화/통일운동의 과제를 여성평화운동 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양자가 분리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본다.

II. 여성·평화·인권

1. 여성과 평화 : 몇가지 질문과 관계설정에 대하여

「여성민우회」는 활동가 집단인데, 통일운동은 어렵고 복잡한 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책임감을 느끼긴 해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대중문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정치중심주의 때문에 어렵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점이 두려움을 느끼며 만들고 통일에 어렵게 다가가야 할지 두렵게 만듭니다. '다름'이라는 문제는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심리적인 거리감을 어떻게 매울까 모르겠습니다. 활동가인 우리에게 통일운동이 두렵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¹³⁾

이같은 생각은 아마도 통일·평화라는 말을 들을 때 여성들이 느끼는 일반적 반응과 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누구나 아주 쉽게 노래하고 "통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는 것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말해주기도 한다.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 평화/통일운동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흔히 그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평화와 여성의 삶의 현실, 통일문제와 여성의 일상이 어떻게 결부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이 여성학 강의를 들을 때 거리감을 느끼고, 왜 여성학을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단지 교양과목이고 학점 때문에 배운다고 하는 반응과 내용은 다르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여성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일상에서 커다란 이야기로 다가오는 평화와 통일 문제는 여성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기에 대중적 여성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여성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과정에서부터 직장에서, 그리고 결혼으로 생기는 다양한 관계와 육아의 경험 속에서 여성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써 여성의식을 같게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여성학이라는 학문에 의해서 대학교 1-2학년 여학생들에게 여성의식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운동이 여성과 만나려면 여성의 일상, 그 일상을 통한 삶의 경험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들,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자각 등등에 깊숙이 파고 들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2. 평화운동과 여성의 일상 : 군사문화와 여성문제

여성평화운동에서 여성과 평화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분단이후 한국사회를 군사주의¹⁴⁾문화라는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여성의 현실을 들여다 보는 것이고, 여기서 세분화 된 것이 바로 방위비 삭감과 여성복지문제이다.

분단 이후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군사정권에 의해 어떻게 재생산, 강화되어 여성을 의

13) 윤정숙(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의 말, '남북한 통일대비 여성들의 역량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중에서, 위의 자료, 280쪽.

14) 군사주의(militarism)란, "국가의 군사적 통제를 합법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가치체계로서 군사적 가치와 정체가 사회를 안전하게 하고 질서 잡는데 생산적이라고 하는 가정에 의해 뒷받침 된다. 즉 군사주의는 '국가안보'라는 이해 아래에서 전투와 시민들을 강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예비군, 민방위 등) 모두를 합법화 해준다." 한편 군사화(militarization)는 군사적 가치, 정체, 준비를 강조하고 종종 민간영역의 기능을 군사적 권위로 대치시키는 과정이다. Betty Reardon, *Sexism and the War System*,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 1985, pp.13-14.

암하는 기제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효재 교수의 「분단시대의 사회학」(1985)에 의해 자세히 분석된 바 있다. 여성평화운동에서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군사(주의)문화와 여성의 연관성을 고찰하려 한 것은 여성평화운동의 내적근거를 한국여성의 구체적 삶의 현실로부터 출발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우리사회가 분단 이후 장기적으로 지속된 군사정권에 의해 사회구성원의 집단의식과 가치관, 이것이 나타나는 사회적 행태가 군사문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던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바이다. 흔히 군사문화의 특징으로는 적대감·적이미지(원수상)의 사회적 재생산, 경쟁과 집단주의, 상명하달로 나타나는 명령과 복종체계, 사상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과 획일주의, 대화보다는 권위와 힘에 의한 의사소통방식의 보편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달성, 학연·인연 등으로 나타나는 '줄서기 문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성평화운동에서는 바로 이같은 가부장적 군사문화 사회 속에서 약자로 자리매김된 여성의 회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자 했는데, 여기서 가장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이 군사화된 사회의 막대한 군비지출과 이에 반비례된 여성복지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발견은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그러나 군사문화와 여성의 현실을 다룸에 있어서 여성평화운동은 경쟁과 획일성, 그리고 폭력의 일상화라는 문제를 보다 깊이 다루지 못했다. 군사문화와 여성의 일상은 여성평화운동이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던 것은 여성평화운동의 내적·외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내적 한계로는 스스로 여성평화운동가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이 숫적으로 적을뿐더러 이들 역시 군사문화와 여성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지지 못한 측면이고, 외적 한계로는 여성평화운동의 현실이 동북아의 군사화 문제와 남북한관계와 남한사회적 군사비 문제, 남북여성교류, 북한여성(아동)돕기 등의 문제에 그 소수의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군사문화 속의 여성의 일상에서 출발한 여성평화운동을 전개시키기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주의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인 '국가안보'='군사안보'의 거짓신화를 극복해 내지 못했던 점도 여성평화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시키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3. 여성의 일상과 평화운동 : 평화교육운동

평화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산재되어 있는 모든 폭력행위를 강화시키는 놀이와 교육 등을 없애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평화적인 사회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문화의 변화를 위한 평화운동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평화운동을 정의 내리게 되면 당연히 인간생명,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활발히 하면서 좀 더 인간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운동으로써 평화운동이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본다.¹⁵⁾

여성평화운동 뿐만 아니라 전체 평화운동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조옥라 교수 가 위에서 제안한 일상 속의 폭력을 강화시키는 놀이와 교육을 어떻게 극복하여 평화적인 사회관계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는 평화/통일운동이 그 동안 핵과 군축, 동북아 질서, 남북관계, 남북교류 등 이른바 커다란 이야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문제, 즉 작은 문제에까지 관심을 돌려야 함을 의미한다.

여성평화운동이 군사문화에 대해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일상의 여성들에게 어떻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부족했던 것은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이는 평화운동의 외연을 확장시켜나가는 데 필연적으로 요구되기에 항시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민으로 나타난 것이 "평화교육"에 대한 평화운동의 관심이다. 작년에 열린 헤이그 평화회의의 의제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의무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현재 전세계의 평화운동에서 21세기에 가장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평화운동과 일상의 삶, 더 나아가 보편적 인권을 염두에 두는 매개체로서 기능할 것이라 보여진다.

한국에서 평화교육은 그 동안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 이해 교육"(학생들의 exchange program을 통해 각 나라의 다양함을 배우게 하는 교육)을 통해 주로 소개되었고, 최근에는 평화운동단체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평화운동단체와 전교조 교사들이 함께 통일·평화교육을 시도한다든지, 단체들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평화교육"의 이름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 등이다.

평화교육을 말할 때 그 내용과 방법의 측면에서 세분화되는데, 지금까지 평화운동단체들에서는 주로 내용적 측면에서 평화교육에 접근해 왔다. 즉 평화란 주제 아래에서 취급되어야 할 주제들에 대한 학습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서 작년에 실시한 여성평화교육은 ①평화철학, 그 개념에 대한 이해 ②세계평화운동사, 여성평화운동사 ③군사주의(문화)와 여성 ④북한사회,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 ⑤동북아시아 질서와 남북관계 ⑥신자유주의와 세계의 군사화 ⑦군축운동 ⑧여성운동과 평화운동 등이다. 이 같은 방식의 교육강좌는 주로 평화가 포괄하는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이 교육을 통해서 수강생들은 '그 동안 잘 모르던 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반응, 즉 지식적 측면의 확대에 긍정적 평가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15) 조옥라, '전쟁과 여성역할,' 연구총서제4집 여성·평화(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편), 평화사(1992), 47쪽.

이 '나(여성)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라고 대부분 평가서에 적고 있다. 이는 평화교육의 다른 방식인 '분단지역 평화기행'(비무장지대, 판문점, 땅굴, 백령도)을 다녀온 후에도 여전히 남는 질문이다. 분단지역 기행은 여성들의 평화의식을 싹트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만, 그것을 일상으로 연관시키지는 못한다.

여기서 "평화운동을 일상으로 연결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텐데, 예를 들어 분단기행도 다녀오고 '무기 장난감을 평화 장난감으로 바꿔주기'에 참여한 여성이나 다시는 자식들에게 권총, 탱크, 로봇과 같은 무기장난감이나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을 사주지 않고, 더 나아가 '왕따현상' 같은 것도 자기 자식들부터 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실천해 나가는 것이 대답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일상의 삶에 대단한 변화가 초래될 것인데, 과연 "평화는 나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라고 질문하는 여성들이 이같은 실천을 해 낼 수 있을까? 이것은 나의 단순하면서도 도전적인 질문인데, 그 깊은 "평화운동의 일상화"가 요구하는 것이 실상 장기적이면서도 인내를 요구하고, 때로는 가족 구성원 내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화운동이 일상화되려면 평화교육을 생활화시켜야 한다. 평화의 주제에 따른 내용만을 '평화교육'으로 학습 받는 것은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 변화의 계기를 준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참여할 내적 동인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평화교육의 방법론, "어떻게 평화의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데, 최근 들어 평화운동 단체에서는 "how"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문제의 출발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평화를 불러오는 존재인가, 아니면 갈등을 가져오는 존재인가?" 이처럼 추상적이면서도 애매한, 또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¹⁶⁾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이다.

4. 감수성 훈련 : 일상에서 출발하여 일상을 넘어서 세계와 지구를 바라보기

자신의 일상 행태에 대해 평화의 관점에서 질문하도록 하려면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이 필요하다고 한다. 감수성 훈련은 자칫 무감각, 무관심해지기 쉬운 문제를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책임적 인식과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평화운동·교육에서 감수성 훈련을 중시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주제나 평화를 이루는 방법,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에

16) 「평화여성회」의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실제로 "나는 평화를 불러오는 존재인가?"라는 강좌제목에 이끌려 수강했다고 한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생태학·자연·환경 등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 부족해도 오염된 공기와 물, 땅이나 유전자조작 식품이 우리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미칠 영향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에 평화운동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는 여전히 일상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주제이다. 예를 들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보고를 듣거나 북한 어린이들의 비참한 영양상태에 대해 들어도 이를 통해 받은 영향의 그림자가 우리 마음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지 못하다. 주한 미군에 의해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뉴스를 보아도 그들의 삶은 우리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티모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고 고문되어도 별로 크게 느끼지 않고, 유고 내전이나 체첸 사태 속의 집과 남편을 잃고 우는 여성과 어린이의 모습, 강간당한 여성에 대한 보고를 보아도 그때 뿐이다.

감수성 훈련은 우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나와 가족, 나와 이웃, 나와 공동체, 나와 우리사회, 나와 우리나라, 나와 남북관계, 나와 동북아시아, 나와 세계·지구의 문제 등으로 그 범주를 확대시켜나가면서 객관화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연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 평화교육 프로그램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으로는 평화를 주제로 한 명상훈련이, 또 세계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데는 영상매체가 효과적이었다. 우리자신이 얼마나 폭력에 무감각하게 노출되었는가는 폭력적 영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된 폭력성을 대리만족 시키고도 그 사실 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짚주리는 북한 어린이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싶어하지 않지만, 007과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속에서 수백명 이상이 죽어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강렬한 사운드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러한 영상매체를 평화와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평화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체들의 역할이다.

감수성 훈련에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차이"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기 위한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차이"와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우리는 "공존"과 "공생"이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도 "다름"과 어떻게 공존하고 공생할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사회가 독특하게 동질적(homogenous)이기 때문인지도 모르는데, '단군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아래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역사와 문화적·지정학적으로 다양성을 경험할 기회를 같지 못해서 우리 안에 "다양성 diversity"라든지 "다원성plurality"에 대한 의식을 내면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그 동질성을 소중하게 간직하기보다는 지역주의, 인연, 학연 등의 분리를 통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해 왔고, 그 다른을 억압하고 적대시하고 차별해 왔다. 평화교육은 "다름"을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데, “갈등해소와 관용훈련”도 그 중의 하나이다.

갈등해소 프로그램은 냉전 이후의 무력분쟁과 갈등의 양상이 종족·종교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거기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뿐 아니라 가치관, 의식구조, 관습, 문화적인 차이가 과거의 잠재적, 물리적, 구조적 폭력 뿐만 아니라 문화적 폭력까지 유발하는 상황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다원사회이면서도 인종주의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미국에서 학교평화교육의 방법론의 하나로 채택되고 있는 것인데, 존재하는 갈등을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입장과 이해를 분명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갈등관계에 있는 상대방(그룹)의 입장과 이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취함으로써 양자가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평화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갈등해소와 관용훈련 프로그램이 점차 시도되고 있는데, 미국 중심의 이 방법론이 한국상황에 적용되려면 다양 계층에 의한 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대별, 성별, 지역별, 계층별 갈등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적 독특한 상황인 분단이 초래하고 있는 다양하고 중증적인 갈등 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교육의 일상화를 위한 감수성 훈련을 위해서는 평화와 인권, 그리고 생태문제의 보편적 이해를 위한 학습이 필수적이다. 나와 가족, 우리에 대한 관심의 지평을 확대하려면 지구공동체의 현실에 대해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영역이 교차되는 상황에서 평화운동단체와 인권운동단체는 ‘상호교환학습’ 같은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을 포함하는 젊은 단체들이 생겨나고 이들의 활동과 소식지는 평화와 인권을 아우르는 데 있어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은 각자의 영역에 대해서는 충실히지만 상대편에 대해서 잘모르고 또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환경·생태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평화와 인권운동이 지구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습의 범위를 포함해야 하는 깊은 우리가 지향하는 정의로운 공생의 사회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할 때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추구하는 운동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평화운동이 물리적, 잠재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폭력을 포함하는 적극적 평화이해를 가지면서도 전쟁방지와 무력갈등의 해소 등에 관한 소극적 평화개념의 운동을 전개해야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평화운동의 맥락에서 자기영역을 구체화·전문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것과 같다. 또한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평화·인권운동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남아있는 법과 제도, 관계의 불의와 반평화를 극복하여 다가올 내일의 세대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와 인권에 인간중심주의적 망을 넘어서는 모든 관계의 생태학적 정의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 유엔과 유네스코의 “비폭력·평화문화를 위한 선언 2000”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5. 비폭력·평화문화를 위한 선언 2000 : 세계인류의 자기변화 선언

유네스코와 유엔은 전쟁과 폭력의 세기인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과거 천년의 전쟁과 폭력의 문화를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로 전환하는 일이 세계인류의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리하여 1997년 유엔총회에서는 2000년을 ‘세계평화문화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Culture of Peace)’로 선포하고, 그 이듬해인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을 ‘평화의 문화와 세계어린이들을 위한 비폭력 10년(International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유엔과 유네스코는 새 천년을 평화문화로 세우기 위해 ‘평화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Manifesto 2000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을 발표하고 전세계 1억명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 서명운동은 “세계인류의 자기선언”¹⁷⁾이다. 즉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나서야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가짐과 사유방식, 삶의 양식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평화문화운동을 열어가자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년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면
전쟁과 폭력의 문화를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로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존엄과 화합의 세계, 정의와 연대의 세계, 자유와 번영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가치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평화문화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그리고 인간의 자아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에 대한 나의 책임을 인식하며, 나의 일상생활과 가정, 직장, 지역, 사회, 국가, 국제 사회 속에서 아래 항을 실천할 것을 서약한다.

첫째, 차별이나 편견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삶을 존중한다.
둘째, 육체적, 성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며,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과 같은 약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비폭력을 실천한다.
셋째, 배타와 불의,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억압을 종식하기 위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17) 이현숙, ‘여성과 평화의 문화’, 함께가는 교회여성(한국교회여성연합회보, 2000.1. 35호), 30쪽.

나의 시간과 물질적 자산을 이웃과 나눈다.

넷째, 광신과 비방, 그리고 타인에 대한 거부보다는 대화와 경청을 항상 선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옹호한다.

다섯째,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 자연의 균형을 보전하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책임지는 소비자의 행동을 통하여 지구를 보전한다.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만들어 가기위해 여성의 참여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한다.

'비폭력·평화문화를 위한 선언 2000'은 21세기의 평화, 인권, 환경(생태문제)에 대한 인간 개개인의 책임성을 천명하는 대한 선언이다. 선언의 내용이 전 인류를 포함하는 것 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가장장적 군사문 화와 경쟁적 자본주의, 인간중심적 개발논리에 왜곡되어 가는 우리사회를 정의로운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인간안보의 내용을 구성하는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운동을 펼친다면 21세기를 비폭력·평화의 세기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만남, 상호 이해와 연대는 더욱 요청되고 있다.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연대

김창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실장)

I. 들어가는 말 : 21세기 평화운동의 전망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20세기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세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0여 년 동안 인류는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동전쟁, 걸프전쟁 등 대규모 전쟁과 크고 작은 온갖 분쟁을 겪었다. 이로 인해서 인류가 흘린 피와 재산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¹⁾ 1914년 발칸반도에서 시작한 세계 1차 대전 이후 인류는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마침내 수 천 년 동안 이룩한 문명을 하루아침에 파멸시키고 인류라는 종(種)의 멸망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핵무기와 온갖 재래식무기를 쌓아 놓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절멸(絶滅)의 시대'라고 규정하고²⁾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쏟을 것을 호소하였다.

전쟁의 세기인 20세기가 저물고 인류는 21세기를 전쟁이 없는 최초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벌어진 미국과 나토의 유고 공습, 아시아의 군비경쟁과 미일 신가이드라인으로 증명되는 일본의 군국주의 경향은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21세기가 되었지만 군비경쟁은 중단되지 않고 지구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21세기를 앞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21세기를 만드는 것, 21세기를 전쟁이 없는 최초의 세기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전쟁으로 얼룩진 20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이다.

이제 우리는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다면 평화가 아닌 전쟁이 우리를 맞이할 뿐이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대결과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이중성도 평화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화해와 공영'이라는 새로운 질서로 창조적인 변화해나갈 것이다.

세계의 진보적인 활동가들은 21세를 전쟁이 없는 세기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

1) 세계 2차대전 이후 크고 작은 250여개의 분쟁으로 1억 7천만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통계도 있다. 조시현,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관계', 18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국제인도법의 도전과 과제"(1999), 21쪽.

2) E.P 톰슨은 이에 "절멸주의란 인류 대다수를 절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절멸의 수단이 축적되고 또 완성되어 사회전체가 절멸이라고 하는 최종목표로 향하는 구조의 결과가 절멸입니다."고 말하고 있다. 리영희, 임재경 공편, 반핵, 창작과 비평사 (1988)

김창수

을 모색하고 있다.³⁾ '전쟁의 재앙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게만 말길 수 없다고 인식하고 민간차원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의 분쟁상황은 '국가의 실패'와 '유엔의 한계'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에 대인지뢰금지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관계에서 NGO가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21세기 국제관계에서 NGO의 역할이 중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⁴⁾ NGO들은 이를 '신외교'(New Diplomacy)라고 정의하면서 모든 국가는 정부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의 공동협력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동서냉전이 해체되는 등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국제관계에서 NGO의 역할이 중대되면서 안보개념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안보개념에 대한 논의는 협력적 안보, 포괄적 안보라는 기준의 논의에 기초해서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제시된 '인간안보'의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분단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의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새로운 안보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정전상태가 5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는 탈냉전의 물결에서 고립된 '냉전의 작은 섬'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이 계속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세계평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군사력 밀집지대인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전쟁발발의 가능성이 없어지고, 군비축소가 이루어지며, 비핵지대가 실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20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20세기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을 외면한다면 21세기는 희망의 세기가 될 수 없다.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20세기의 아픔들을 치유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갈 때 21세기는 평화와 화해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일제 식민지 지배로 인한 상흔은 간직하고 있는 동포,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금세기 우리가 겪은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동포, 분단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동포 등 이념을 초월해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20세기의 아픔을 치유하기

3) 헤이그에서 1999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평화대회(Hague Appeal for Peace 1999)에서는 채택한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이루하기 위한 열 가지 기본원칙'에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구적 행동계획이 평화로운 세계질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은 <http://www.globalactionnpw.org> 참고

4) 해마다 1월 말부터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2000년부터 처음으로 NGO대표들이 초청되었다. 이 회의에서 이 회의에 참가한 전경련의 손병두 부회장은 "NGO가 세계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인가 파트너인가를 논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인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중요 문제해결에 실패한 데 대한 결과물인가 등을 논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NGO들의 영향력 역시 점차 커질 것으로 예감되었다."고 평하였다. 손병두, '다보스 포럼과 엔터프로너십', 문화일보 2000.2.8.

위한 우리의 양심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민족의 양심과 각으로 정신대 할머니, 히로시마 나카사키의 피폭자, 태평양 전쟁 희생자, 한국전쟁 피해자, 이산가족, 베트남전쟁 피해자, 대인지뢰 피해자, 미군범죄 피해자, 장기수와 국가보안법 피해자, 조선족 사기피해자 등 우리 민중들이 겪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21세기는 20세기의 아픔을 재생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노근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세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형인 노근리 사건을 완전하게 해결할 것이다.

평화운동의 이와같은 과제들은 군사화와 전쟁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것에 대한 자각에 기초해서 전쟁반대와 탈군사화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즉 평화운동의 목표는 천부적 인권이 존중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⁵⁾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화론의 기초이고, 여기서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접점이 형성되는 것이다.

II. 인간안보와 인권, 그리고 평화

1. 인간안보와 인권

국가의 안보와 경제개발 논리가 더 이상 국민들의 안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은 국가들 사이 갈등뿐만 아니라 국가내에서 다양한 갈등에 관심을 갖게 했으며, 냉전 밖에서 국민의 안보를 진전시키려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게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제기된 것이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이다. '인간안보'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펴낸 1994년판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서, 인간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 또는 영토 안보로 좁게 해석돼왔던 안보개념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안보로 강조점이 옮겨지게 됐다. 인간안보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와 정치적 안보의 총합계로서 정의되어진다.⁶⁾

인간안보는 인도주의적 활동, 즉 국내외 폭력갈등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인간의 불안전의 원인을 규명한다. 따라서 인간안보는 단기적 인도주의 활동과 평화건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략 필요이 필요하다. 인간안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규범의 형성과 이를 집행할 능력의 형성, 새로운 인권 기준 마련, 폭력에 의존

5) 김동온, '평화에 관한 근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평화·평화교육의 종교적 이해, 내일을 여는 책 (1995), 248-249쪽

6) 정경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새로운 안보개념의 발전과 대중화 모색, 미발표 논문

김창수

함 없이 갈등을 조절할 사회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1> 안전보장의 제개념 비교

	안전보장의 주체	개체	위협의 원천	수단	목적
전통적 국가안보	국가	국가	국외/군사적	군사력	국가(국민)의 생존
인간안보	국가/국제사회 (UN)	개인	구조적 사회문제 (빈곤, 인권억압, 환경파괴, 범죄, 군사화), 내전	인간중심의 개발 평등의 배당	개개인간의 생존능력 예방외교
사회안보	국가, 사회	사회	사회내외의 집단	사회통치정책 다문화주의정책	사회의 정체성 유지
지구 규모의 안보	국가/국제사회 (UN 등)	지구	분쟁, 전쟁, 자연 문명	예방외교 (조기경보, 조사) 개입	인류의 생존

栗栖薰子, 人間安全保障, 일본국국제정치학회‘국제정치’ 제117호, 안전보장의 이론과 정책, 1998년 3월, 98쪽

하지만 인간안보는 전통적인 안보개념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안보개념을 현대적으로 수정하면서 인간안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전통적인 안보개념의 재정의는 남북관계가 ‘통일을 함께 할 동반자’라는 측면과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성국가’라는 상황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정확하게 살피고, 두 측면의 차이를 좁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냉전적인 안보개념에 벗어나서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도 통일지향성을 분명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상에 기초해야 한다.

첫째, 협력적 안보(cooperative security),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등 현대적 안보개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⁷⁾ 협력적 안보란 군사력에 의한 억지에 의존하기보다는 상호간 군비에 대한 통제 및 감축을 통해 무력사용이나 사용위협에 직면하지 않도록 안보상 보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포괄적 안보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 정치, 경제, 외교, 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⁹⁾ 군사력

7) 김대중 정부는 ‘집단적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협력적 안보개념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한편 함택영 교수는 ‘포괄적 안보’에 대해서 “안보의 의미를 계속 확장하게 되면 국가이익이란 개념과 차별성이 상실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법문사, (1998), 19쪽.

8) 이철기, ‘통일시대를 위한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새로운 방향 모색’, 광복50주년 기념 남북한관계 학술대회 “분단50년과 통일전망”, (한국정치학회, 1995.11.11), 10쪽

증장이란 필연적으로 남북한 군비경쟁을 가져오고,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생태적 위협에 대처할 수 없게 되는 국방딜레마에 빠지게 된다.¹⁰⁾ 협력적 안보와 포괄적 안보개념을 현실화한다면 군사력 증강 중심의 안보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민족은 공멸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안보개념의 전환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¹¹⁾ 안보개념을 이렇게 전환해서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원천은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차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새롭게 재정의해야 할 대안적인 안보개념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내용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우선시하고, 적정 군사력을 확보하여 남북갈등을 관리하고 나아가 통일조국을 수호하며, 세계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원과 환경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대처한다. 그렇다면 평화운동은 포괄적 안보와 협력안보의 개념에 기초해서 전통적 안보개념을 재정의하면서 인간안보로 개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간안보로 개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은 긴밀하게 연대할 수 있다.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연대가 인간안보를 달성할 수단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2. 평화의 개념과 인권운동

평화운동이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이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어떤 가치를 뜻하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9) 1977년 노무라 연구소에서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한 이래, 일본은 이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이민용, 백종천, “한반도 공동안보론”, 일신사(1991), 97쪽. 최근 국방백서도 “종래 군사위주의 전통적인 안보개념이 정치, 군사, 경제 영역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국방백서, 1998) 19쪽

10) 국방딜레마에 대해서는 배리 부잔 저, 김태현 역,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 나남출판(1997), 305-329쪽 참조

11) 이와 관련하여 맥피크 전 미공군참모총장의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맥피크는 공군참모총장 재임시인 93년 12월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미 양국군은 궁극적으로 북한군을 저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나 “지형적으로 볼 때 서울이 이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는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에 어떠한 규모의 미군이 배치되더라도 지형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전에 우리가 북한군을 저지할 수 있을지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천리안, 동아일보, 1993. 12. 4자

평화는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이 실현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인적 인간의 가능성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는 인간의 분열과 소외가 극복되고 행복이 보장된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상가들과 종교인들이 평화를 정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기초해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현대 세계의 사목현장'에서는 평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요 적대세력간의 균형유지만도 아니며, 전체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다. 더욱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현실화가 바로 평화이다."¹²⁾

그러므로 평화는 폭력, 억압, 공포, 위협에 의해서 강요된 질서나 강자가 약자를, 물질적인 부를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질서가 아니다. 공동묘지의 고요나 강요된 질서는 생명의 죽음만을 의미할 뿐 결코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평화는 인간의 내면적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국가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생명이 서로 어울리는 상태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내적인 자아가 성숙되지 않을 때 개인에 의한 사회의 균형이 파괴되는 행위가 발생한다. 어울림이 깨질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인간과 국가의 관계에서 억압이 발생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종속이 발생하며,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생태계의 파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평화운동은 인간의 생존권, 환경권, 건강권 등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운동을 내포하고 있다.

평화문제는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당연히 상대화된다. 역사적 과정속에는 상대성을 거부하는 절대성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인류가 직면한 온갖 재난과 같은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평화운동의 영역을 규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과잉 군사화가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과잉 군사화는 필연적으로 인권의 희생을 동반한다. 지금까지는 전통적 안보개념이 인권에 우선했기 때문에 인권운동은 평화운동의 영역에 접근하기 힘들었다. 평화운동이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인권운동의 관점을 가지고 대처할 때 평화운동의 본질적인 가치가 빛을 발휘할 것이며 인권운동과 구체적인 연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¹³⁾

12) 박종대, '카톨릭의 평화관', 현대사회와 평화, 서광사 (1991) 94쪽

13) 인권운동의 관점에서도 평화운동과 연대가 논의되고 있다. "군비축소와 평화문제도 인권의 시각에서 새롭게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지요. 저희로 인한 사망자가 일년에 2만 6천~2만 8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피해자의 90%가 민간인인데다가 저희는 무차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류적 살상무기이기 때문에 없애야 하고 국가가 없애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원웅, '유엔의 인권보호제도와 절차',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1998), 532쪽

III.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연대 모색을 위하여

1. 대인지뢰 금지운동과 인권

대인지뢰 반대운동은 평화운동, 통일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의 폭넓은 폭넓은 연대성을 실현하는 운동이다. 대인지뢰는 여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살육하는 비인도적인 무기이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이러한 비인도적인 무기에 반대하는 인도주의에 기초한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여 인권과 평화를 21세기 한국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확립하는 국민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⁴⁾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지뢰는 비무장지대에 매설되어 있고 정부의 관리와 통제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전중인 나라들과는 달리 안전하다고 말한다.¹⁵⁾ 하지만 비무장지대가 아닌 부산 중리산, 경남 양산 원효산, 포항 봉화산, 충남 홍성 제기산 등과 같은 후방지역에서도 대인지뢰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지뢰로 인해서 민간인도 피해를 보고 있다. 비가 많이 오면 발목 지뢰가 떠내려와서 주민들은 "불안해서 아이들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고 호소하기도 하며, 심지어 떠내려온 지뢰 때문에 농민들의 추수걱정이 커지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발목지뢰로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¹⁶⁾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지뢰사고는 92년부터 97년 10월까지 모두 48건의 지뢰사고가 발생해 3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인 31명의 사상자 가운데는 어린이 1명의 사망도 포함되어 있다. 대인지뢰 피해는 산채캐러가서 대인지뢰를 밟거나, 홍수로 낙시터에 떠내려온 대인지뢰를 밟은 경우, 그리고 산불이 나면 대인지뢰가 폭발하여 속수무책인 경우 등 다양하다. 한국의 대인지뢰 피해자들은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렇듯 한국에서도 대인지뢰는 민간인에게도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대인지뢰는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사용되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80년 5월24일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진압부대들끼리 서로 사격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진압군에 참가했던 군인들은 "갑자기 선두 차량이 90mm 무반동총에 맞아 도로변에

1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엮음,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 민중사 (1998), 13쪽

15) 워싱턴 타임즈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실태에 대해서 부정확한 이해에 기초해서 대인지뢰 금지를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 타임즈는 97년 10월 3일자에서 "90년대 들어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4년전 한 여인이 대성동마을 외곽에서 한국전쟁 당시 설치된 지뢰에 의해 다친 것이 유일하다"고 보도하여 한반도에서는 대인지뢰가 잘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없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16)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위의 글, 69-70쪽

처박하고 사방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로 옆 나무를 엄폐물로 삼아 몸을 숨기는 데 여기저기서 지뢰가 터졌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이런 곳에 지뢰가 있다니…하지만 폐인 웅덩이나 폭발음으로 보아 지뢰가 분명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¹⁷⁾ 지뢰를 밟은 군인들은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해서 진압부대들끼리 서로 사격을 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는 계엄군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지뢰를 사용했다는 최초의 기록이다.

대인지뢰는 무차별적으로 민간인까지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민간인을 향해 부정하게 사용할 가능성까지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적인 무기이다. 전세계적으로 대인지뢰운동이 거둔 성과는 NGO 운동의 성과이고,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성과이다.

<표2> 92년부터 97년까지 지뢰로 인한 사상자 현황*

	사망	부상	계
민간인	15** (국방부 미집계 1인 포함)	16*** (국방부 미집계 1인추가)	31
군인	22	34****	56
계	37	50	87

* 국방부가 97년 10월 2일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지뢰사고현황 자료’를 기초로 작성

** 93년 강원도 양구에서 민간인 2명이 사망했는데 1인 누락

*** 95년 4월 20일 경남 양산 원효산에서 발생한 민간인 1인의 지뢰사고가 누락.

**** 97년 6월 13일 군인 1인 지뢰사고 누락

2. 매향리 미군 사격장 이전 운동

미 7공군의 쿠니사격장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 위치하고 있다.¹⁸⁾ 한국전쟁 발발 이듬해인 1951년 겨울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40여 년 간 사용되어 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 공군이 쿠니 사격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¹⁹⁾ 매향리 주민들의 피해는 피해상황은 소음피해, 오발 오폭에 의한 피해, 사격장 부지를 둘러싼 피해, 미국 군대와 국가로부터 피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²⁰⁾

17) 중앙일보 1995. 12. 27

18) 쿠니 사격장의 용도는 앤더슨 소령이 “주위에 높은 산이 없고 안개끼는 날이 드물어 항상 폭격 연습이 가능하고, 남양반도의 끝에 자리잡고 있어 바다와 육지를 연결한 폭탄공격연습을 가능하게 하여 아시아에서는 공군 사격장으로 최적지다”고 말한 바에서 잘 알 수 있다. 김창수, ‘평화만들기 통일이루기’, 대동 (1995), 201쪽

19)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사격장 책임자인 앤더슨 소령은 “피해보상과 사격장 이전은 어디까지나 한국 국내문제”라고 강조하였다. 한겨레신문, 1988. 7.28자

20)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 1995년까지 주민들로부터 모두 172건에 28억원의 피해배상청구가 접수

가. 소음피해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인가는 매향리 주민들의 증언에 잘 나타나 있다.²¹⁾

“요즘 들어 사격횟수빈도가 잦은데다 최첨단의 기종들이 발생하는 폭음으로 텔레비전 시청과 전화난청은 물론 옆사람과 대화마저 할 수 없는 병어리 아닌 병어리, 귀머거리 아닌 귀머거리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하고, 야간사격을 하는 밤이면 밤잠을 설쳐야 하며, 분만을 앞둔 산모들은 출산할 아기애 대한 근심걱정을 해야 하고, 폭음으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고, 어린 아기들이 놀라 자지러질 때는 돌팔매질을 해서라도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싶을 만큼 울화가 치미는 극한 심정을 실로 겪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리. 또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마다 백이면 백명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런데서 어떻게 사십니까?’가 인사인지라.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 대를 이어 이 곳에 살아 온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저로서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비애감을 느끼면서도.”

이처럼 매향리 주민들을 괴롭히는 소음의 원흉은 포탄(특히 기관포)의 폭발음과 저공비행하는 비행기의 폭음이다.²²⁾ 주민들의 진정으로 미공군이 88년 7월 25일과 8월 2일 실시한 소음측정 결과 90에서 110 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의 소음측정단위)로 나타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불능지역으로 판명되기도 했다.²³⁾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소음도 90 WECPNL 이상일 때는 사람이 살 수 없으며 완충녹지대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오발 오폭피해

기관총 탄피나 시험용 포탄이 논밭에 떨어지거나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일은 빈번하다. 전투기가 저공비행하다 길이 50Cm 무게 12Kg 가량의 폭탄을 투하하여 민가가 파손되고 부근 전선이 두절되어 정전이 되기도 한다. 피해지역을 지나던 사람이 갑작스런 폭음에 기절하여 입원치료하였으나 후유증으로 실어증세가 나타난 적도 있다. 초등학생들이 바다가에서 주워온 불발폭탄을 분해하다가 폭발해 물살하였으며, 굴을 따라

되었다. 경기일보, 1995.3.11자

21) 김창수, 앞의 책, 203-204쪽

22)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89년 11월에 발표한 매향리 소음피해 조사에 따르면 매향리 주민들은 타지역 주민들에 비해 이청, 난청, 어지러움, 소화불량, 식욕부진, 흉부불쾌감, 호흡곤란, 두통, 불안, 불면, 신경질 등의 증상 호소율과 평균혈압, 평균 맥박수, 고혈압 위병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서 소음에 의한 광범위한 피해를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23) 미군도 ‘사격장의 소음측정치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 폭격훈련장 대책세우라, 1989.5.31 자

바다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 숨지는 등 주민들의 크고 작은 피해는 계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7명이 사망했으며 15명이 부상당하였다.²⁴⁾

다. 토지의 강제징발과 어장상실

1968년에는 사격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38만여 평의 농지와 반경 8000feet의 황금어장을 국가에서 징발하여 현재까지 사격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66년 체결된 한미 행정협정 12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당시의 보상액은 시가의 10/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은 일방적으로 희생되었다. 어장과 농지를 잃고 얻은 것은 비행기 소음과 오발사고에 대한 두려움뿐이다. 특히 일방적으로 토지 징발을 통고하고, 은행에 예치한 땅값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상으로 몰수하는 등 주민들의 생존권을 폭력적으로 희생시키는 모습들이 서슴지 않고 행해졌다.

65년부터 75년까지 경기도 화성 군내에서는 매향리가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75년부터는 소득수준이 군내 최하위를 맴돌았다. 마을 소득의 80%를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어장을 빼앗긴 이후 5Km 앞의 마을 어장에서 고기잡이를 못하고 12Km 이상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매향리의 소득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는 요인이다.²⁵⁾

라. 미국 군대와 한국정부의 탄압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 미군은 농지에 자갈을 뺏고 조업하는 어부에게 총을 쏘기도 했다. 89년 5월 29일 미군은 사격장내에 있는 전만규씨의 500여평의 논에 흙과 자갈을 부어 매몰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M16으로 무장한 15명 가량의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진격하여 해산시켰다.

이러한 미군의 만행에 대한 검찰쪽의 대응도 적절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미군을 단 한 사람도 법적 절차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도리어 미군의 만행에 의해 농토를 잃은 전만규씨와 미군의 폭행으로 5Cm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백동현씨를 특수공무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89년 6월 어장에서 조업중이던 마을주민 손달근씨에 대한 헬기기총사격은 미군주둔의 심각한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다. 조업지역에서 날벼락을 맞은 손달근씨는 손을 관통

24) 강은지, '끝나지 않은 전쟁, 신세대가 찾은 매향리', 사람이 사람에게 창간호 (2000년 1, 2) 40쪽

25)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1989년에 "농업소득의 감소로 만성적이고도 장기적인 빈민화의 길을 걷고 있어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해어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화성군 매향리 미군전용사격장 지역조사 보고서', 역사비평 1989년도 제4집, 역사비평사

당하였다.

마. 인간안보 차원에서 바라본 매향리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

냉전의식이나 반공이데올로기는 매향리 주민들의 절실한 생존의 요구 앞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공산당도 싫지만 포탄과 폭음소리는 더욱 싫어'

'주민 잡는 국방안보 웬말이냐'

'누구를 위한 한-미 행정협정이기에 타국(일본, 필리핀)주둔 미공군 훈련생들이 내 고향 땅에 와서 폭격훈련을 한다는 말이냐' (1989년 3월 1일 대책위 유인물)

주민들은 국방안보라는 엄청난 이름으로 사격장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공세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국가안보는 국민을 위한 안보'라는 각성 때문이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피해주민들은 북괴의 공산당을 근본적이고 원칙적으로 증오하고 배척합니다만은 국방안보라는 빌미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공포속에 생존권을 침해하며 일상 생활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는 국방안보문제는 상당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며 폭음으로 인한 주거생활이 하루하루 지겹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²⁶⁾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방안보는 모순이라고 느낀 것이다. '반공에 근거한 안보'가 어떠한 가치보다도 최우선인 한국사회에서 '안보에 우선한 가치로서 생존권'이 자리잡았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매향리 주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인간의 삶의 질을 안보의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인간안보 개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3. 무기도입 비리와 인권

1995년 국정조사와 감사를 통해 밝혀진 국방예산 예산낭비액은 2천 3백억원이었다. 이미 낭비된 요소로 기종결정과 계약과정에서 법절차와 규정무시, 업무불찰저로 인해서 1천1백억원, 특정업체 부당특혜로 인한 낭비 2백 95억원, 부당 커미션 지급 2백 81억원, 기종변경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낭비 5백95억원 등이다.

그러나 기술도입 성과 저조, 전력증강의 차질 등으로 약 1조원의 예산이 낭비될 가

26) 김창수, 앞의 책, 211쪽

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더 놀라운 일이었다. 당시 낭비 가능성 있는 요소로 지적된 것은 핵심기술이전 미비와 국산화 실패로 전투기사업 7천2백49억원, UH-60헬기 9백 56억 원, 잠수함 1천14억원 등 총 9천 2백 19억원에 이르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3년 후 1998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무기도입과 방산, 조달, 병무, 부대운영의 비리에 의해서 1조 7백 5십억원 가량 국고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다.²⁷⁾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는 3년 전의 지적이

<표3> 1998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제기된 주요 군비리 의혹

	구분	국고손실(억원)	뇌물횡령(백만원)
해외무기도입	CN235 중형수송기 도입	1,300(손실우려)	
	UH60 헬기도입	4,600	
	휴대용대공미사일 미스트랄 도입	2,400(환차손)	
	KF16 전투기 보상협상 난항	1,000(손실우려)	
방산, 조달	P3C 대잠함 초계기 도입	365	
	해군기지 건설 설계변경	757	
	방산업체에 대한 노무비 과다계상 원가상정 오류	300 32	
병무	입영대상자 부모로부터 뇌물 수수		400(추정)
부대운영	국방부 정보본부장 공금횡령		150
총액(국고손실 +뇌물횡령)		1조 755억 5천만원 (추정)	

자료 NEWS+ 160호(1998.11.26)에서 재구성

현실이 된 것이다. 경제위기로 실업자와 노숙자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결식어린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군의 비리는 한국군이 국가안보라는 성역 속에서 오히려 국가안보를 좀먹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알맞다.

국방부는 98년 국정감사 기간동안에 제기된 5대 의혹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5대 의혹이란 UH-60 헬기 고가도입 의혹, 백두사업 로비의혹, P-3C 도입의혹, 국방연구원 등 산하기관 비자금설, 병무비리 등이다. 5대 의혹 가운데 병무비리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는 무기도입과 관련된 것이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군의 비리 가운데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주로 해외무기구입이나 방산, 조달 등 무기거래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²⁸⁾

27) NEWS+ 160호, 1998.11.26자

28) 한국의 무기거래 비리는 대부분 미국무기를 도입과정에서 발생한다. 미국은 국제적인 무기 거래를 주도해온 나라이다. 무기수출은 국내에서 유효수효 창출을 통한 자본과잉을 해결하고 해외에서 더 높은 이윤율을 실현해준다. 무기수출은 독점자본에게는 '만병통치의 신비로운 묘약'이다. 미국의 대 한 무기 수출 형태는 50년대 이후 한국에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71년 이후에는 차관(FMS)으로 전환된다. 한국의 관료들은 미국의 FMS 규모가 크면 미국의 안보지원이 공고한 것이고, 적으면 한보 지원의 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미국의 FMS차관은 세계은행(IBRD) 차관보다 이자율이 월씬 높은 것이었다. 이자율이 높다보니 80년대 이후에는 FMS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 액이 차관도입액보다 오히려 커졌다. 차관을 도입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현상이 초래하였고, 이는 한국의 외채부담을 증가시켜서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한국군의 무기도입과 관련한 비리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안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간안보'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건이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국군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 무기거래와 관련한 비리 등으로 낭비된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농가부채나 기업의 부도로 인한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무기거래와 관련한 비리는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유출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4. 군가산점제도와 군축

1999년 12월 23일 군가산점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을 보일 정도로 논쟁이 비화되었다. 군경력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책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점제도 폐지'가 '군경력에 대한 보상 반대'의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남성들의 반발이 커졌다. 군가산점제도 논란에서 나타난 남성들의 태도는 "돈 없고 빼없어 강제 징집되어야 했던 힘없는 남성을 상대로 싸움을 건 여성단체의 부도덕한(?) 행태를 열렬히 비난하면서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병역기피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하였다"고 이해된다.²⁹⁾ 즉 한국 남성들의 징병제 아래서 군복무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사건인데, 이를 계기로 바람직한 군복무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군복무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뿐만 아니라 제대군인들의 지위 향상과 군대 운영의 민주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군축은 병력감축, 장비감축, 정집제도의 변화, 방위예산 재조정 등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병력감축과 방위예산 재조정은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작고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구조조정의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군무기도입 비리를 근절시키는 대안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대의 민주화를 이루하여 군대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남북한이 군축을 통해서 병력을 감축하게 되면 병역제도와 예비군제도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군대 비리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는 병무비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병역대상자의 수급과 형평을 고려하면서도 전투력을 보유할 수 있는 병역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이다. 남북한이 군축을 통해서 병력규모를

환한다. 한국의 관료들은 미국의 FMS 규모가 크면 미국의 안보지원이 공고한 것이고, 적으면 한보 지원의 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미국의 FMS차관은 세계은행(IBRD) 차관보다 이자율이 월씬 높은 것이었다. 이자율이 높다보니 80년대 이후에는 FMS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 액이 차관도입액보다 오히려 커졌다. 차관을 도입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현상이 초래하였고, 이는 한국의 외채부담을 증가시켜서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29) 정강자,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제언' 2000년 2월 9일 열린 '군가산점문제 어떻게 풀것인가'에 대한 여성, 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 발제문.

30만으로 상호감군할 경우 매년 35만명이 되는 징집대상인구의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의무병제도의 유지는 불가능해진다. 즉 매년 35만의 징집대상 인구를 형평에 맞게 징집할 경우 30만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병역규모보다 병력자원의 과잉공급 현상이 초래하게 된다.³⁰⁾

그러므로 30만 감축조치는 병역제도의 구조적인 변혁을 가져온다. 30만으로 감군은 징집제를 지원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현재의 16만 규모를 유지하는 직업군인과 모병제에 의한 14만 규모의 사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통일을 대비한 병역제도는 직업군인제도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³¹⁾

미국은 73년 7월 1일부터 완전지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지원제를 채택하여 병력 수급과 형평성을 해결하면서도 전력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게이츠 위원회의 연구보고를 토대로 “유사시 징병제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지원제를 채택하였다. 게이츠 위원회의 보고요지는 다음과 같다.³²⁾ 첫째,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정기간 사병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군복무의 매력에도 악영향을 기칠 것이다. 둘째, 지원병제도로 전환은 군대에 대한 인식을 바꿀 것이다. 세째, 전원지원제는 징집병과 지원병으로 구성된 현재(73년 이전)의 군대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보다 나은 대우를 하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네째, 취업기회의 균등과 고용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 임여인원의 누적으로 형평의 구현이 어렵다. 게이츠 위원회의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지원제는 강제적인 사병근무를 개선하여 군대 인권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5. 태평양 전쟁 청산과 피해자 인권회복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는 아직도 일본에 의해서 자행된 태평양 전쟁의 전후처리조차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없는 평화로운 아시아의 21세기를 위해서는 전쟁의 잘못을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반성하고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태평양 전쟁이 발생했던 20세기가 종료되었지만 태평양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

30) 김창수, ‘냉전제도의 해소와 군축을 위한 분석과 대안’,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현과 정책적 대안, 역사비평사, (1992), 208-211쪽

31) 직업군인제란 군인으로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선병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을 위하여 보수가 지급되며, 군인의 길에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된 제도이다. 모병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 신분별, 그리고 병과별 희망에 따라 지원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모병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애국의식에 바탕을 둔 제도라는 점에서 용병제와 다르며 명예로운 높은 직위 등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등 군인의 길에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있는 것으로 인식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직업군인제와도 구분된다. 오동렬, 앞의 책.

32) 오동렬, 각국병역제도비교연구, 병무청(1990), 107쪽-204쪽,

다. 태평양 전쟁에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 징용자와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고, 히로시마 나카사키의 한국인 피폭자 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 전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회복이고, 일본으로 하여금 지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을 약속해서 아시아와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과거에 행한 부정의를 방지하고 있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전쟁은 무법의 상태가 아니다. 전쟁 당사자인 국가가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 것이다. 민간인을 무차별로 죽여서는 안되며, 점령지 주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 등 근대에 들어와서 확립된 기준은 전시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포츠담 선언 6항에는 “일본 국민을 기만하고 이로써 세계정복의 행동으로 나간 과오는 범한 자의 권리과 세력은 영원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제거 대신에 천황, 정치지도자, 관료 등 구체제를 이용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미국은 전쟁범죄의 처리보다는 일본을 대소 전진기지로 삼는 것을 우선하였다. 이는 미국이 포츠담 선언을 스스로 파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생체실험 등 세균병기개발을 행한 제731부대의 성과를 획득하는 대가로 그들의 전쟁 범죄를 면하였다. 아시아의 여성을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 삼은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미군은 전쟁중에 이미 그 사실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트락섬의 조선인 위안부를 전후 진주과정에서 미군의 위안부로 삼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군의 전쟁범죄가 만든 성과를 미군이 이용하는 것을 우선했던 것이다.

이렇듯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전후 정책은 독일에 대한 정책과는 크게 달랐다. 아시아에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처리와 피해회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미국도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독일에 의한 피해국이 프랑스나 영국이었던 것과는 달리 일본에 의한 피해국이 약소국이었다는 사실이 아시아에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불완전하게 처리하게 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전후처리에 6백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일본은 배상금으로 15억 달러를 지불하였다. 독일과 일본의 차액은 585억 달러는 일본이 아시아에 대해서 채무를 갚지 않은 잔액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태평양 전쟁과 관련해서 조선인 군인, 군속 문제, 조선인 피폭자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3대 사안이다.³⁴⁾ 태평양 전쟁을 전후해서 일본에 강제 연행된 조선인은 150만에서 200만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발단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다. 국가총동원법은 전쟁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의 총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통제하고 운용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따라서 ‘반도동포 2천 3백만 모두가 황국신민으로서 변함없는 정신적 태세 아래

33) 전후 처리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비교는 타나카 히로시 외 지음, 기억과 망각, 삼인(2000) 참고

34) 전후 보상에 대해서는 최용기 옮김, 전후보상의 논리, 한울 (1995) 참고

내선일체협력'이라는 가치 밑에 강제연행이 시작되었다. 강제연행으로 군인, 군속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끌려가서 피폭을 당해서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1965년의 한일협정은 군대위안부, 원폭피해자, 강제징용·징병자 등 식민통치와 태평양 전쟁의 온갖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 원인이 되는 협정이다. 따라서 불안전한 한일협정은 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할 때는 배상금 지불을 통해서 과거청산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반 상처에 대해서 남북이 함께 대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IV. 맷음말

1999년 5월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평화회의는 21세기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시민의 아젠다를 제안하였다.³⁵⁾ 헤이그 회의의 제안은 평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써 시민대변자들, 진보적인 정부와 관료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함께 만들어 온 새로운 민주주의의 최근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헤이그 회의에서는 인종, 민족, 성별 그리고 종교적 불관용성 제거, 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교육, 남녀평등 증진, 어린이와 청년 보호,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법의 수렴 분야 사이의 긴밀한 협력 강화, 국제 형법 재판소를 위한 후원 강화, 전쟁 희생자 보호와 치료, 인권 보호자, 인도주의 노동자, 내부 고발자의 보호 등 평화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의제들이 제기되었다. 헤이그 회의에서는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새로운 평화문화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하였고,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도 이미 80년대부터 이러한 시도를 해왔다. 80년대 이후 한국의 평화운동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 생존권과 인권 차원의 접근이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해온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한인 피폭자 문제, 태평양전쟁유족회 등에서 전개한 태평양 전쟁 희생자 문제,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신대 문제 등이다. 피폭자, 태평양전쟁 희생자, 정신대 등은 50년 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핵과 전쟁, 식민지 지배 등 총체적 반평화적 구조의 산물이다.

둘째, 민족의 자주권과 민중의 생존권이 결합되어서 제기되는 미군범죄 근절운동,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 등이다. 경기도 화성군의 미공군 쿠니 사격장의 사격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은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하였다. 전국의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도시발전, 교통, 환경, 범죄 등의 차원에서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35) 헤이그 회의에 대해서는 <http://www.haguepeace.org> 참고

세째, 반전·반핵·군축운동이다. 앞서 언급한 한반도의 군사적 구조를 살펴본다면 반전·반핵·군축운동은 한국평화운동의 핵심사안이다. 반전·반핵·군축운동은 청년학생, 지식인, 여성, 종교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방위비 삭감운동은 군사안보적인 차원의 평화운동을 국민들의 생존권과 결부시켜서 진행시켜왔다.

네째, 통일운동이다. 통일운동은 한국 평화운동의 특수한 형태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통일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간혹 평화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현재의 남북한 대치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평화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단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파생시킨 구조적인 요인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운동은 필연적으로 통일운동을 포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우선해야 할 것은 과잉 군사화와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평화운동은 분단에서 비롯되는 냉전의식, 전문성의 부족, 평화운동과 대중의 생활과 연결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신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의 평화운동은 헤이그 회의에서 제기된 접근법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매향리 미군기지 폭격 훈련, 대인지뢰, 군사비리, 군복무제도, 전쟁범죄 등을 한국의 평화운동이 헤이그 회의의 제안을 실현할 실현적인 사안들이다. 연대는 부족함을 확인할 때 시작된다. 평화운동은 이러한 실현적인 사안들이 다양한 인권문제와 관련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폭넓은 연대의 실현을 통해서 평화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다양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환경을 만들자.

- 스크린쿼터를 지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실장)

인간 발전의 방향은 문화 발전

발전이란 생산과 생산성을 중심에 두는 경제발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진보를 문화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발전과 경제는 인간 문화의 한 부분이거나 측면이다. 인간 발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은 궁극적으로 문화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므로 인간적인 요소를 모두 모은 문화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문화는 인간 존재를 융성하게 하는 발전의 목적이다. 문화는 나라와 민족 사이의 가장 효과 있는 대화수단이다. 인류가 서로 의존하는 방법이자 대화하는 수단인 문화가 지닌 위력을 이해한다면 문화교류의 필요성은 분명해진다. 문화는 고립적일 수 없고 서로 영향을 주며 성장한다. 문화적 국제협력은 잘 모르는 문화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하고 다양성 속에서 공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문화유산과 문화가치들이 있고 이것은 그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창조적인 문화변형이나 혁신은 상당한 보존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유지되는 전지구적인 문화·경제 패권은 문화다양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시장 합리화와 영리 최대화는 근본적으로 문화 다원성, 사회정의와 양립할 수 없다. 시장은 발전에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빈곤과 결핍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다원성(다양성)은 상호이해와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신장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이다. 국제협력이 주로 경제분야에서 이뤄지는 것은 물질적 발전논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국간 은행, 초국적 기업, 그리고 경제·정치 엘리트 사이에 벌어지는 새로운 지구적 제휴는 지구 대부분을 재식민화해서 경제적 지배를 지속시키고 확장한다. 더 새롭고 세련된 형태인 식민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는 지난날 발생했던 것에 비해 훨씬 큰 위협이다. 한미투자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제기된 한국영화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제)의 폐지 혹은 축소 주장도 이와 같은 물질적 발전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경제체제 안에서 '문화적 예외'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문화를 발전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정당한 판단에서 나온다.

한미투자협정(쌍무협정 : BIT) 체결과 관련한 자유시장론자들의 스크린쿼터(자국영화

의무상영제) 폐지론은 문화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사례라 할 수 있다. 강력한 로비단체인 미국영화협회(MPA)의 스크린쿼터 폐지 주장은 소수 초국적 시청각 매체의 세계 시장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에 기반하고 있고, '관객의 선택권'이라는 허구에 기대 스크린쿼터 유해론으로 화답하고 있는 국내의 자유시장론 또한 같은 입장에서 있다. 체결의 목적인 외자 유치의 효과조차 불분명한, 그래서 고위 경제관료들의 위험천만한 개인적 실적 쌓기 협의가 짙은 일명 '투자자 권리협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세계화란 어떤 것인가? 세계 자본주의의 전일적 지배 본성, 세계적 경쟁의 불가피성, 세계적 경제 효율성의 기준, 일국 경제를 통제하는 국가역량의 약화 등에 강조점을 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미국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만들어 가려는 힘의 지배라는 원칙에 충실한 세계화일 것이다. 미국영화협회 회장 재발렌티 등이 말하는 "스크린쿼터의 폐지를 통한 한국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결국 "우리는 전부, 다른 사람은 전무"라는 능력지배 원리의 불평등성과 부도덕성을 감추려는 수사일 뿐이다.

논란의 전말

'한강의 기적'(?)을 자랑하던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경유착과 저임금으로 유지되어온 독점체제의 비효율로는 더 이상 대외 경쟁력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은 IMF 관리체제를 몰고 온 중요 책임자인 경제관료들에게 힘이 실리는, 발언권이 강해지는, 역설을 낳았다. 이 상황에서 1998년 6월 한미투자협정 체결이라는 사안이 떠올랐다. 외자유치가 절박한 과제였던 우리측에서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정을 제안한 것이다. 본래 초국적 자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세계적 수준에서 이윤율을 유지하고 축적을 증대시킴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축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자유화·탈규제·민영화·자유무역체제·지구화 등으로 선전되며, 그것의 핵심은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 축적을 가로막는 각국의 제도 및 구조를 철폐하여 전세계적 탈규제 체제를 성립하는데 있다. 투자자의 의무는 거의 없고 권리보장만을 중시하는 미국과의 투자협정을 체결한 40여개 국가 대부분은 경제적 저개발이거나 구소련연방에 속했던 '체제 변환국'들이다.

양국간의 관계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선 미국이 제시한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전범 : prototype)에는 "투자와 관련하여 체약국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에게 어떤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제6조)는 '이행의무 강제 금지의 원칙'이 있다. 이 모델이 그대로 채택되면 스크린쿼터제(국산 잎담배 사용의무, 투기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세이프 가드 등도 마찬가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만 할 운명이다. 그런데 미국과의 협상을 맡고 있는 한국 통상관료들의 문화인식의 수준은 저급하기 이를 데 없고, 심지어 독선적이기까지 하다.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도 마찬가지다. 영상산업은 이제 경제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그 자체의 부가가치는 물론 다른 분야에 미치는 이미지 형성과 같은 파급효과가 큰 것이다. 정부도 그래서 영상산업을 비롯한 지식산업을 강조한다. 한편으로 강조하고, 한편으로 포기하는 이율배반에 빠져있는 관료들은 문화분야는 중요하지 않다는 기본입장과 가치관으로 대외협상 테이블에 참여해왔다. 1980년대 중반에 이미 자동차 대미수출을 위해 영화분야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전력이 있음을 기억하자. 따라서 문화분야를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공세적 논리에 대응할 생각조차 없었다. 이들은 미국의 요구와 상관없이 우리의 쿼터 일수가 과도하다거나,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들은 한 번도 영화인들에게 협상의 배경이나 경과를 설명해 준 적도 없다.

급기야 미국이 점차 스크린쿼터를 줄여서 머지않아 완전히 폐지할 것을 한국정부측에 요구했고, 정부측은 폐지는 어렵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리고 1998년 11월 말부터 60일이 넘게 이어진 영화인들의 겨울 농성이 시작된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3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우리영화 지키기 공대위'도 연대 투쟁을 벌였다. 1999년 1월 5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정부의 '한국영화의무상영제' 유지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다.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국회에서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쿼터제의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문화적 예외'라는 선진적인 원칙 내지는 덕목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채택했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4천년이상의 문화적 뿌리를 가진 강력한 문화국가로 스크린쿼터제가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것이 양국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학급한 사안은 아니"며 "한국이 잘 돼야 미국이 잘된다"고 한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이 나왔다. 한미투자협정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뒤이어 "스크린쿼터제를 한미투자협정 체결과는 별도로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통상교섭본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

그러다가 19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 미국방문이라는 계기를 통해 다시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고, 영화인은 또 거리로 나섰다. 6월 초여름 농성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 영화업계 특히 MPA의 축소 주장은 완강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한미투자협정 체결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비록 김 대통령의 7월 방미중에 협정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 문제는 계속 논란거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 대표가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를 분리 처리하자는 제안서를 MPA측에 보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미국 측이 바라는 종착지가 '한미자유무역지대'라는 얘기는 미 상공회의소 대표의 발언을 통해 이미 공개되었다. 미국은 물러서는 척하면서 더 큰

것을 얻어내려 하고 있다. 1999년 11월부터 본격화된 WTO 뉴라운드(밀레니엄라운드) 다자간협상에서 '문화적 예외'를 계속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수용자 극대화 전략, 복합기업화와 국제화

오늘날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미디어 산업은 집중화되고 다양화되는 변모를 보이고 있고, 미디어 기업은 복합기업화되고 국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 시장에서 공고한 기반을 구축한 소수의 기업집단은 '수용자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기반을 확대시켜 나간다. 수용자 극대화란 곧 '이윤창구의 다각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문화 생산물의 이용도를 최대화하며, 우세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유사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연관시장을 개척한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나타나는 미디어 기업의 국제화는 외국 미디어 기업을 직접 소유하거나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여 통제하는 방법으로도 구체화된다. 또 영상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해외판매는 직접적인 이윤을 창출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타산업의 해외시장 침투를 위한 문화적 기반 조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수용자 극대화'라는 경제적 측면의 변화가 문화적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첫째, 시장의 힘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제함에 따라 각 미디어 부문에서 점점 더 힘있는 소수의 주장만 남게 된다는 것. 달리 말하면 수용자(시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미디어 기업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은 가장 보편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핵심 가치들에 의존하는 한편, 이단적인 의견 또는 지배 신화에 모순되는 반대 의견을 거부한다. 쉽게 이해되고, 통속적이며, 공식화되고,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며, 동화될 수 있는 허구적 재료에 대한 요청은 바로 영리상의 명령이며 미학적인 처방이 된다. 둘째, 미디어 시장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본의 기초가 없는 집단을 축출해버린다는 것. 원론적으로 협소한 시장을 가진 주변부 사회의 문화산업은 자체 프로그램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이때 수입된 문화물에 담긴 중심부 국가(강대국)의 가치와 세계관이 함께 이전되어, 고유의 문화가 파괴되고 산업사회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문화제국주의론은 '문화종속'을 국가간의 정복관계, 경제적 잉여의 수취, 정치적 군사적 식민지화 영향이 어우러질 때 나타나는 결과로서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 의미, 지식체계,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회에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사회 통합과 문화적 정체성

통합(integration)에 대해 논하면서 캘훈(Craig Calhoun)은 직접적인 사회관계와 간접적인 사회관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근대화로 인해 대인관계의 세계(가족·친구·이웃 등)와 대규모 집합적 조직체(정보기술, 관료적 조직체, 시장 등) 사이의 괴리가 증대하였음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에 따르면 직접적인 관계망의 세계에서 이룩하는 통합(사회통합)과 간접적 관계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상상 공동체' 세계의 통합(체계통합)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된 것이 근대화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다. 그는 (1)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대인적인 관계의 세계, (2) 개인적인 연고가 있다고 상상하는 관계의 세계, (3) 감시를 당하는 관계처럼 한쪽에서만 알고 있는 일방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관계의 세계, (4) 실제로 인간의 행위나 권력의 작용이 직접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차각을 갖게 하는 체계통합의 세계로서 비인간화·비언어화한 조정매체에 의해 조정되고 통합되는 세계 등 네 가지 세계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연결되는 세계는 (2)에 해당한다. 캘훈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 크다. 통합을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동시에 성원들의 일체감 형성이라는 문화적 차원을 아울러 다루고자 할 때, 간접적 관계의 세계인 상상의 공동체라는 개념은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상상의 공동체를 매개하고 조정·통합하는 기능을 주로 대중 통신 매체와 시장과 다국적기업이나 정부와 같은 전 구적인 관리 행정 조직체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상의 공동체의 세계에서는 대중적인 매체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별(스타)들'이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일체감을 조성하는 정신적 구심체가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¹⁾ 그의 논지는 결국 영상소프트웨어가 그 내용에 따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도 하고 역행하기도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국경과 국적이 무의미한 21세기"라는 말은 지나치게 경제결정론적이거나 기술결정론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판단이다. 자본의 입장이 아니라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더 그렇다. 그래서 "교육과 문화의 수준으로 선후진국을 구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영화는 영상매체 전 분야로 공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일정한 수익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생활양식을 전파함으로써 상품소비까지를 좌우하는 커다란 파생효과를 갖고 있다. "민족문화란 전체 민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된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체계의 저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논의를 통하여 변화 발전하는 하나의 장으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하여

1) 이은죽, "남북한 사회통합의 이론적 탐색", 이은죽 외,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 삶과꿈, 1997) '상상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란 민족주의를 다루기 위해 앤더슨(B. Anderson)이 사용한 용어.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의식을 주로 공통의 일체감으로 연계된 거대규모 집합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찾으려는 성향이 증대하는 반면, 직접적인 대인관계의 연결망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최소화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은죽, 같은 글. 38쪽.

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²⁾. 그러나 그럴수록 영화를 비롯한 영상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은 더욱 더 필요하다.

시장기능의 불완전성 때문에 모든 것을 시장의 기능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주장이, 국제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활발한 대응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라는 공공기능과 시장기능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는 정책적 개입은 그 방식이 문제이지 개입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공급이 수요를 가의 정책적 개입은 그 방식이 문제이지 개입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공급이 수요를 낳는다는 말은 영상정보산업 분야에서 쉽게 확인되는 명제이자 경제적 원칙이다. '정보화 사회(급속한 정보기술 혁신과 함께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정보화와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현상)' 또는 뉴미디어 시대의 개막이 불러온 국제 관계의 부정적 변화는, 모든 국가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문화의 표준화'에 동참할 것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정보기제의 확보를 둘러싼 무한경쟁 속에서, 한 국가나 소수의 기업집단에 의해 민주주의와 미디어의 다양성과 질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국의 시장 상황

흔히 영화 중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헐리우드 영화라고 말한다. 상당히 옳지만 전적으로 타당하지는 않다. <고질라>가 내세웠던 "규모가 곧 경쟁력이다"는 논리를 검토해보자. 영화관의 연간 흥행수입만 8조원(1999년도 67억6천만달러) 쯤인 시장 규모만으로도 다른 국가는 미국의 발 밑에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그러나 '흥행 성공'을 판단근거로 삼는다면 헐리우드 영화 중에는 경쟁력이 있는 것 보다 경쟁력이 없을 경우가 훨씬 많다. 별면 크게 별지만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한 편 영화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의 중요 요인이 되는 것은 영화의 제작편수와 배급망(영화관 숫자)이다. 어떤 영화 한 편이 반드시 성공하리라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제작편수 중에서 흥행성공률이 얼마쯤 될 것이라는 확률을 예측할 수는 있고 그것이 저작권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비디오나 방송 등으로 활용할 때 얻어지는 저작권의 가치가 크다는 점도 중요한데 보유물량이 많을수록 영화사의 자산가치는 커진다. 미국의 전체 영상시장 규모는 영화관 흥행수입의 15배가 넘는다. 메이저 영화사 거래가격이 수십억 달러씩 되는 유일한 이유는 영화사가 갖고 있는 저작권 때문이다. 결국 영화사는 영화 한편한편의 경쟁력만큼 가능하면 많은 편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편수가 많을수록 영화관 확보에도 유리하다. 1999년 국내 개봉된 직배영화 71편중에서 서울 관

2) 이수영, 「외국채널의 유입과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방송개발 (1997년 봄·여름호)」, 방송개발원. (P. Schlesinger의 견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객 15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16편, 따라서 흥행확률은 23% 쯤이다. 한국영화는 49편 중에서 14편이었으니 29%. 영화관측은 흥행성이 큰 몇 편의 영화를 확보하기 위해, 기꺼이 다른 영화까지 상영해 준다. 대신 한국영화나 다른 외국영화는 우선 순위를 빼앗긴다. 편수와 배급망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영화사들만이, 대대적인 선전공세로 분위기를 띠우고 많은 영화관에서 순식간에 흥행수입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몇 편만 성공시켜도 다른 여러 편에 들어간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더구나 외국에까지 배급망을 짜놓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선 금상첨화다. 가장 비싸게 만든 미국영화가 외국 시장에 팔릴 때는 현지에서 제작된 영화 보다 훨씬 싼값에 팔릴 수 있는 것은 박리다매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제는 세계시장 70%를 점하고 있는 미국영화의 시장독점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아무리 경쟁력 있는 영화 몇 편을 만들 수 있다해도 '다매체다채널'을 채울 수 있는 많은 물량의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영상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미국도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한다. 방송프로그램의 시간대별 편성비율을 정하거나 소수자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주류영화에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인력을 공급해주는 다양한 영화와 방송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논리를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국제시장에 적용해 보자. 주류상업영화의 경쟁력은 언어권의 크기와 국력이 결정한다. 세계 영상시장을 점령한 미국영화의 힘도 넓은 영어권 시장과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에서 나온다. 그러나 비주류영화의 뒷받침이 없이는 주류영화가 존재할 수 없고 산업이 유지되지도 못한다. 따라서 방법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의 문화 특히 파급 효과가 큰 영상산업을 보호하려 애쓰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 보조금 지급, 2) 쿼터제 등 비율규정, 3) 유통배급망을 통한 개입 등이 있다. 미국과 동일 문화권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이나 호주는 1)의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프랑스와 히스페닉계 국가는 2)를, 일본은 3)의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며 중국 등은 2)가 강화된 수입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문화의 고유성을 강한 반면에 국내시장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 한계까지 안고 있다. 프랑스처럼 유럽공동체 차원의 문화 블력을 형성할 수도 없고, 인도나 중국처럼 국내시장이 크지도 않으며, 일본처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도 못한다. 결국 국제협정이 인정하는 한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책을 써야 한다는 결론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아직까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장치가 남아있고 보조금의 규모는 보잘 것 없으며, 몇 년 전까지 쿼터제도 유명무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5억 안팎의 제작비를 쓰는 한국영화가 7천만달러씩을 쓰는 헐리우드영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25%안팎의 시장점유율(1999년 36%)을 지켜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김혜준

일이다. 개방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 중에서 자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인 나라는 프랑스와 일본 정도이고, 우리와 비슷한 편수 혹은 오히려 많은 영화를 제작하는 많은 나라들이 고작 10% 안팎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사실은 확인된다. “관객은 수준이 높다. 영화를 잘 만들면 보지, 개방화시대에 궁색하게 쿼터제가 뭐냐”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영화라는 상품과 시장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좋은 영화를 만들어 내도 영화관을 못 잡는데, 더구나 관객에겐 그 영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게 되는데, 관객의 높은 수준이 무슨 소용인가?

이제는 영화의 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때다. 크고 웅장한 헐리우드 영화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은 규모지만 다양한 비헐리우드 영화의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획일화된 오락성이 아니라 다양성의 가치이다. 쿼터제가 없다면 한국영화는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 홍행 여부를 겸종 받을 최소한의 조건조차 얻기 어렵다. 한국영화를 비롯한 비주류 영화의 경우, 굳이 영화의 경쟁력이라는 것에 경제적인 관점을 도입하려면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제작비 보다 홍행수입이 더 많으냐를 따지는 투입-산출의 개념을 적용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영상산업 전체를 고려하면 시급하게 영화제작 편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 국제간의 협상에 임하면서 힘이 약한 우리 입장에서 혼자서 미국과 상대하면 결과는 뻔할 것이다. 방법은 쌍무관계가 아니라 다자간 협상을 통해 약자의 입장에 서있는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며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것이다.

세계인의 문화연대와 대안적 세계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을 잃은 사회는 노예화된 사회이다. ‘영상의 시대’인 지금, 가장 효과적인 표현 수단은 바로 영화를 정점으로 하는 영상물이다. 따라서 한국인이 한국영화를 지키는 일은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다. 미국은 최소한 자국 내에서만은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민족·인종·성적 소수자의 입장을 담은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퍼블릭 액세스(public-access)’ 같은 장치를 가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원칙을 세계적 범위로 확대하지는 않는다. 유네스코 문화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의 제목은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이다. 다양한 가치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 그것이 인류가 추구하는 문화발전의 모습이고, 그렇게 될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영화를 지키는 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창조적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하는 일이다. 다수 혹은 강자의 가치만이 존중받고 소수 혹은 약자의 가치는 완벽하게 무시되거나 억압당하는 사회,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할 때, 통상협정에서 ‘문화적 예외’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문화 분야에 있어서의 최고의 경영방식이자 문화 고유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다.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의 방향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의 방향이다.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한국 영화인과 국민의 노력은 이제 ‘세계인의 문화연대’라는 한 차원 높은 문화운동으로 진전되어 가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는 궁극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시장자유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WTO 뉴라운드를 비롯한 새로운 협상이 계속될 것이고, 발전을 둘러싼 가치관 사이의 논쟁도 계속될 것이다. 모든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펼 수 있는 ‘표현의 수단’을 갖는 것, 그래서 모든 이의 ‘창조적 다양성’이 신장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연대의 목적이어야 한다. 한국 영화계는 미국의 문화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세계영화인들과의 연대를 제안해놓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신장하기 위한 국제연대(가칭)’의 활동은 뉴라운드를 대비하는 작업이자 평화와 공존의 원리를 존중하며 세계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작업이다. 나아가 이 활동은 협력적인 주도권, 국제법의 발전, 규제가 가능한 정치·경제 질서로 특징지어지는 대안적 세계화의 길로 이어질 것이다.

외국인이 본 한국의 인권 상황

박노자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경희대 전임)

1) 머리말을 대신하여

19세기 초반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입국하여 조선에 대한 정보를 밖으로 전달하기 시작할 때 전까지는, 조선에 대한 유럽인의 유일한 참고서는 1653-1666년간에 표류의 관계로 본의 아니게 조선에서 머물렀던 화란인 하멜의 그 유명한 <표류기>이었다. 유럽에서 이 자료가 지금도 상당히 중요시되지만, 한국에서는 일찍 (1954년) 이병도 박사의 국역본이 있고, 뒤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국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은 것 같다. 언문도, 한문도 잘 몰랐던 나아 어린 이방인이 썼기에 때로는 잘못된 관찰이나 사실적 오류도 있지만, 이미 자본화·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화란의 국민이었기에 때로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의 사법 제도에 대한 하멜의 기록을 읽을 때, <실록>과 같이 지배자의 입장에서 기술된 국내의 자료를 읽을 때의 느낌과 전혀 다른 느낌이 든다. 그 제도를 보고 경악하였던 하멜 자신의 좌절과 분노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본의 아니게 하멜의 일행들이 제주도에 도착한 지 얼마 안되어 발생된 사건이었다. 파멸된 하멜의 배의 파잔물 몇 개를 가져가려던 몇 명의 주민들이 불집혀 현감 앞으로 끌려 왔다. 표류해 온 화란인들 앞에서 현감은, 파잔물을 가져가는 것이 범죄임을 몰랐던 이 도둑이 아닌 “도둑”들에게 족장 (足掌) 30-40대의 곤장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 다음의 광경을 하멜은 이렇게 묘사한다:

“곤장의 굵기는 팔뚝만하고 길이는 사람의 키만 하였다. 이 형벌이 어찌나 준혹하든지 [“도둑”들 중에서] 발가락이 빠져나간 자도 있었다.”

산 사람의 발가락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순간, 하멜과 그 일행은 무엇을 느꼈을까?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도 그 때 제대로 몰랐던 그들은, 그들에게도 언젠가 그 무서운 면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도 그 때 처음으로 했을 것이다.

제주도의 목사가 교체됨과 같이 신임 목사는 표류인들을 각종 방법으로 구박하기 시작하였다. 압박과 멸시 속에서 여생을 보내느니 차라리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6명의 표류인들이 한 주민의 배를 탈취하여 도주를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들이 목사에게 끌려 가 체형을 당하는 일을 하멜은 이렇게 기술한다:

“각 사람이 25대씩 곤장으로 불기를 맞았는데, 곤장의 길이는 한 발쯤 되고, 그

넓이는 네 손가락 폭이나 되고, 두께는 엄지손가락 두께만 하였고, 때리는 쪽은 판판하되 딴 쪽은 등글었다. 이 곤장의 형이 어떻게 무자비하게 혹독하였던지 그 맞은 사람들은 한 달이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밖의 우리들도 외출의 자유를 빼앗기는 동시에 밤낮으로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

체형으로 발가락이 빠지는 것을 이미 본 바 있는 화란인들이 이제 양반 지배자들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곤장형”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일찍부터 이렇게 체험한 바가 있어서 그런지 하멜의 일기의 곳곳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체형의 잔학성과 위협성은 매우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하멜이 쓴 <조선국지>에서도 사법 제도에 대한 장(章)이 따로 있다. 거기에서 강빈(姜嬪)의 육사 사건으로 김홍육(金弘郁)이라는 곧은 선비가 맞아서 죽은 일(鞠殺事件), 남편을 살해한 여자나 주인을 살해한 노비를 우리 상상 이상의 고문으로 죽이는 일, 정절을 지키지 못한다는 죄목으로 유부녀를 “조리돌리는” 일, 사형을 독단으로 내리지 못하면서도 약 100대의 곤장으로 “상놈”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던 지방관들의 무서운 폭력 등 양반 지배 체제의 폭력적 면들을 살살이 파헤쳤다. 조선을 가혹하기 짝이 없는 “체형의 전제 왕권”으로 규정한 것은 하멜 관찰의 결론이었다 (헨드릭 하멜著, 李丙燾譯註, <하멜漂流記 附 朝鮮國記>, 一潮閣, 1954. 29, 37, 76-80). 30년 전쟁(1618-1648년간)의 광기가 아직 다 가라앉지도 않은, 이단인이나 소위 “마녀”를 가끔 화형에까지 처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유럽도 그다지 자유롭거나 자비스럽지 않았지만, 그 배경에서도 조선의 지배 방식은 하멜에게 상당히 가혹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보였다. “상놈”的 신체적 자유나 재산, 목숨까지도 관료의 명령의 한 마디에 흔적 없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조선의 현실은 하멜에게 너무나도 딱하게 보였다. 19세기 이전의 조선을 찾아가 기록을 남긴 유일한 유럽인인 그의 저술을 보고 당대의 현실을 재구성하면, “목민관”들의 애민(愛民)사상이나 도덕적 규범, 주민으로부터의 수취에 있어서의 자제(自制) 등이 엄연히 있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태생적이고 보편적이고 신성불가침한 개개인의 인권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인권의 개념이 차차 발생될 수 있는 토양인 피치자의 권리 의식, 치자의 준법 개념 등이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상당히 미약해 보인다.

하멜이 조선을 찾아온 지 이미 거의 350년이 지난 현재. 그 동안 조선 민중이 자기 권리 확립과 법치, 그리고 나아가서 정치적·사회적인 자유를 향해서 힘센 몸부림을 치면서 엄청난 희생을 부단히 치렀다. 하멜이 묘사한 조선의 전근대적인 지배 구조가 비합리적이고 가혹한 만큼, “위로부터”的 폭력과 무분별한 수취에 저항하는 민중의 투지도 강인하였다. 1862년의 대대적인 농민 저항과 1894년의 동학의 의거,

일제시대의 다양한 독립 운동과 분단 이후의 남한 진보계의 희생적인 투쟁, 4.19의 학생 혁명과 민주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1987년의 전국적인 대대적 투쟁... “상놈”的 발가락이 빠져나갈 정도로 그를 손쉽게 폭행할 수 있는 수취자를 향한 조선 민중의 분노는 다른 나라에서 가히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이 땅에서 사는 서민들이 경찰서에 가서 팔시나 언어적인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도 하멜의 시대처럼 생각도 하기 무서운 “태형”에 처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끈질긴 투쟁의 소득이다. 전근대적인 지배자들이 그 기득권의 만분의 일이라도 절대로 자의로 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선 민중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원님 앞에서 “상놈”的 발가락이 쉽게 빠져나가는 인권 부재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술을 보면, 폭력적인 지배 방식과 특정 계층에 대한 인권의 박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바로 여기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번 체육 시간 때 나는 무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어떤 아이가 어색한 행동이나 말대꾸로 체육 선생의 진노를 산 셈이었다. 그 선생이 아이를 자기 앞에 세워 놓고 발로 차기 시작하였다. 그 선생의 눈에 광기가 어려서 차마 옆에서 보기로 무서웠다. 그 선생은 불행한 아이를 축구공처럼 계속 발로 차고 또 찼다. 아이는 통증으로 꿈틀거리면서도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결국, 아이가 완전히 무너진 뒤에 선생은 그를 이제 밟기 시작하였다. 나는 아이를 구출하고 싶었는데 그 선생의 광기 어린 눈이 너무 무서워 나까지 얻어맞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파시스트 수용소와 같은 학교도 아닌 학교로 나의 아들이 다니지 않으니 정말 다행이다”

위의 내용은 건국대학교 러시아어과 초빙 교수이었던 러시아인 츠베토브박사가 그가 러시아어를 가르치게 된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1996년에 직접 목격한 일을 필자에게 구술한 것이다. “태형이 워낙 일반적이라 조선인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다”고 말한 하멜이 조선을 떠난 지 이미 350년이 거의 다 된 현재, 이제 양반도 아닌 교육 공무원에게 “상놈”도 아닌 한 학생이, 조선 시대의 그것과 본질적인 차이도 없는 무분별하고 비합법적인 폭력에 묵묵히 당하였다. 그것도 한적한 곳이 아닌 일체 급우와 외국인 선생까지 보는 앞에서이었다. 지금도 현대판의 “태형”이 별로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인가? 현재와 하멜 때의 차이라면, 현대적인 교육 공무원과 달리 문치를 승상하였던 조선 시대 양반들이 보통 “상놈”에 대한 폭력을 직접 집행하지 않았던 점 이외에 별로 없어 보인다. 조선 시대와 달리, 현대판의 학교의 “목민관”들이 사서삼경을 외우면서 자기 성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들이 현대판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절대적인 복종과 자기 존엄성 포기, 군대적

인 규율과, 개성이 결여되는 “질서”는, 조선 시대의 목민관들의 요구에 비해서 오히려 훨씬 심한 편이다. 조선 시대보다 더 근거 없고 명분이 없는 “위로부터”的 폭력은 명색이 근대 국가인 대한 민국에서 대낮에 외국인까지 보는 데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 문제를 화두로 삼아 그 다음의 이야기를 전개해 보자.

2) “위대한 보통 사람”的 위대한 일상적인 폭력성.

대한 민국의 헌법 11조에 의하면, 일체의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아무런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법제는 구미의 그 것을 본보기로 삼아 만들어진 만큼,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정 악법이나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선거법, 노동법 등 구체적 법률의 일부 독소 조항을 제외하고는, 현대적인 국제적 규범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광의의 사회 통념과 각종 기관들의 운영상 관례로 한국민의 상당 부분이 많은 기본적인 인권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들 각종의 소외 계층은 형식상으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대부분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많은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와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들은 사회의 주변부에 밀려 주류층의 성공과 안정된 생활의 발판 정도의 역할만 한다. 특히 이 현대판 “양민”과 “천민” 중에서 초중고교생들과 대학생, 대학원·박사과정생, 윤락녀·미혼모·이혼녀·가정폭력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 지식산업의 일용 잡직 노동자(소위 “시간 강사”), 소위 “철거민”과 노점상, 실업자를 비롯한 도시 최빈층과 중소기업의 고용자, 그리고 외국 노동자(특히 불법 근로자)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이들 각종 소외 계층 중에서 대표적으로 일상적인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초중고교생들과 외국인 노동자 등의 상황에 대한 나의 간단한 인상을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7) 초중고교생. 90년대의 긍정적인 사회 변화가 가장 가시적으로 느껴지는 곳은 바로 초중고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 오랫동안 학생들의 목을 졸랐던 파쇼적 궤변의 극치인 소위 “국민교육헌장”이 드디어 1994년에 사실상 폐지됨으로써, 수백만 명의 학도들이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 따위를 달달 외우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라”는식의 군대적 굴종을 체내화(體內化)시켰던 그 무섭디 무서운 체벌들은 마침내 사회적 토론의 대상

이 되어 실제로 상당히 합리화·완화되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측, 또는 개개인 교육공무원의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문제로 삼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등 권리 주장하는 것을 많이 배웠다. 그리고, UN의 Economic and Social Council까지 요구했던 전교조의 합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교단 사회 내의 진보계가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기본적인 인권인 학생의 자기발전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는 소위 “대학 입학시험”제도의 개선 노력이 가시화된다 는 사실은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위에서 말한 긍정적인 변화들로, 한국의 초중고교들은, 관계 “궐기 대회”와 “반공교육”, 교련 등의 아동의 인간성을 원천적으로 말살해 버리는 집단적 광기가 어린 행사만이 반복되는 70-80년대의 지옥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었다.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교육공무원이 화풀이하고 싶을 때 “동네북”的 역할을 하는 가난한 가정 출신의 아이를 자로 마구 때려 불구자로 만들 수 있었던 시대는 확실히 지났다. 그러나 과연 지금은 재학 연령의 아동들이 태생적이고 보편적인 모든 인권을 다 향유할 수 있는가? 과연 지금은 아동은 학교에서 처음부터 연령·사회 신분과 무관하게 남을 평등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

필자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학교가 과도기 중인 것 같은데, 권위주의적인 과거의 유제(遺制)들이 그 해독을 완전히 끼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새로 발전되어 나가는 방향은 민주와 인권만을 지향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첫째, 아동들을 폭력에 대한 무감각증, 힘에 대한 굴종 등의 체제에의 굴복으로 유도해 왔던 파쇼적인 체벌 제도는 완화되었을 뿐 근절되지 않았다. 교육법에서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처벌·징계권만 언급되고 “체벌”이라는 용어 자체도 빠져 있다는 점은, 오래된 통념과 관례상으로는 체벌의 묵시적인 허용을 의미할 뿐이다. 그리하여 UN의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1996년부터 요구해 왔듯이, 체벌을 명시적으로 법적으로 엄금하는 것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처음에 체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의지를 나타냈던 “국민 정부”는, 근래에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보수표를 의식하여 보수 언론들의 체벌 옹호론에 많은 양보를 한 것 같다. 체벌 교사에 무죄를 선고한 최근의 현재의 판결을 바로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진보적 목표와 현실주의적인 단기적 정책 간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 혼선은, 사실상의 체벌의 존속을 가능케 하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떤 학교의 교장은 일선 교사들에게 체벌을 의무화시켜 체벌에 대한 기록부 작성의 지시하는 등 국제 인권 관념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체벌들을 “제도화”, “법률화”시키는 자세를 취하였다.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모 초등 학교의 교사들이 체벌에 대한 부모의 항의에 부딪치자 이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인간성 모독형의 체벌(강제적인 옷벗기기, 서로 뺏치게 강요하기, 귀 잡아당기기 등)을 선호한다. 아동에게 신체적 피해를 덜 입히는 만큼 정신적 피해를 보다 많이 기치는 셈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거의 폭력으로 인식되지도 않지만, 아이들에게 폭언들 퍼붓고 언어적인 모욕을 가하는 것은 여전히 학교의 관습으로 남아 있다. 즉, 현 정부의 단호하지도, 일관적이지도 못한 체벌 정책은, 신체적 피해·육체적 통증 위주의 기준의 체벌로부터 정신적 모독 위주의 “신세대형” 체벌로의 이동을 초래했을 뿐, 학교 안의 파시즘의 뿌리를 뽑지 못하였다.

둘째,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지만, 일방적인 훈육과 통제, 권위 강요형의 지식 전달 위주의 “상명하복적”인 학교 분위기가 인격 도약, 창조력 발휘, 아동 참여 유도 식의 교육으로 바뀐 것 같지 않다. 교육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실에서 “어른으로서의 권리”의 상징인 반말이 계속 사용된다. 한국 사회와 한국어 화계법(話階法)의 특징을 고려하면, 사제지간에 사적인 대화에서 반말 사용이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의 평등과 공(公)·사(私) 분별, 상대 존중법을 가르쳐야 할 민주적인 학교에서, 위계 질서를 공식화·절대화시키는 교실에서의 반말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 정부”的 교육부의 교실에서의 존댓말 사용 권고의 노력은 매우 고무적으로 보였는데, 이 노력이 사실상 별다른 결실을 맺지 않은 것은 “국민 정부” 개혁 정책 추진력의 취약성과 학교의 고질적 보수성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상습적인 반말 사용과 함께, 현재에 많이 완화되었지만, 머리 검사·풍기 통제·정기적 조회 등의 군대식 통제 장치들은 아직까지 학교를 “엄하고 전능한” 현대판 목민관들이 “어린 백성들”을 “제도”하고 “통치”하는 “작은 왕국”으로 만들고 있다. 과연, “어른”的 권력이 절대적인 만큼 이에 거역하는 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체험해 가면서 체득한 사람은, 커서 약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윗사람(교사 등의 교육 공무원)이 아랫사람(학생)의 앞길을 열어 줄 수도, 막을 수도 있는, 절대적인 권력과 복종을 위주로 하는 학교 사회에서 자란 청년들은, 연령·직장상의 상하 관계가 상대적인 반면에 태생적인 만민 평등이 절대적이라는 현대 인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셋째, 학교에서 폭압적인 굴종 강요의 분위기가 부분적으로 사라진 뒤에 심리적인 공백을 메운 것은 민주와 인권, 학리 탐구보다 무분별한 소비주의·상업주의다. “입시”的 악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식 취득이 아이들에게 하나의 “부역 노동” 정도로 인식되고, 그들의 진정한 생활이 저질 대중 문화와 유행품의 경쟁적인 소비에 있는 것 같다. 돈을 비교적으로 쉽게, 그리고 부회뇌동적으로 쓰는 10대들이 재벌

그룹들의 “효자 시장”이 되어 민주적인 타인 인권 존중의 절대성 등보다 시장의 원색적인 법칙들을 더 빨리 배운다. 시장이라는 스승이 기본적인 사회 의식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인간의 가치가 태생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돈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는 후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는 현대적 소비주의의 기본 원칙, 남보다 소비 감각이 뒤지거나 소비 능력이 떨어지면 동류 소비자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어 “왕따”신세가 된다는 소비주의적 부화뇌동의 원칙, 집단 내의 위치를 확립하고 남의 추종과 부러움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최종적인 인생의 방침 등이다. 현대적 소비주의는 “개성”과 “개별성”, “개인 차별화”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보편화된 소비는 소비자 집단의 각 구성원에게 거의 의무화되어 소외 공포 심리에 의해서 부추겨진다. 요즘 최신 전자 게임들을 화제로 삼아 동류들과 이야기할 줄을 모른다면 “왕따”된다면서 꾀시실에서 복적거리는 아이들은 과연 개성과 독립심으로 사는가? 소비 수준이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좌우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절감하는 청년들이, 학교에서 복종과 질서를 배우면서 결국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어 소비를 잘 하기 위해서 처신을 잘하고 타협을 잘해야 한다”는 인생의 방침을 굳힐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학교에서 배우는 권리주의적인 타율성과, 시장에서 배우는 소비주의적 타율성은 결국 개인적 신념도 이념도, 철학도 없는 철저한 타협주의자·기회주의자를 배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수 언론들이 강조하는 선생의 권리 저하, 아동 일탈 증가, 아동 도덕 불감증, 학생간의 폭력 빈발 등의 “흔들리는 학교”的 현상들은 파쇼적 권리주의의 돌연한 부분적 와해에서 비롯된 “전도된 권리주의”에 불과하다. 진정된 도덕과 선생님의 권리의 “위로부터의” 폭력과 타율적 굴종의 옛날 학교에서도 없었을 것이고, 권리주의의 완화 이후에 생긴 현상들이 이 사실들을 드러냈을 뿐이다.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자세를 갖추도록 강요를 받은 학생들이 더 이상 강요를 옛날만큼 받지 않아 흥내도 덜 낼뿐이다. 그리고 “공인된” 수직적인 폭력이 억제된 만큼, 이미 폭력에 길들여져 폭력을 당연시하는 학생들이 수평적인 폭력을 통해서 반 내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김영삼 정권이 1995년부터 “학교 폭력 근절”을 외쳤지만, 별 성과는 당연히도 없었다. 수십 년의 파쇼적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 안의 폭력적인 분위기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집중적인 노력과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복종의 타성과 소비의 원색적이고 기만적인 쾌락에 중독되어 창조력과 혁신적 의기,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최소한의 순수성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나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된다. 최신 일본 만화를 보지 못하였다는 친구와 대화조

차 거부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인권 의식 가르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이미 90년대 초부터 인권 침해·유린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없이 많이 거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소위 “산업 연수생”과 한국 일반 근로자들이 같은 시간과 강도의 노동에 대해서 비교도 안될 만큼 서로 다른 월급을 받는다는 임금 착취 문제, 직장에서의 학대와 구타, 산재 보상의 미흡, 그리고 무엇보다 고질적인 월급 체불의 악습은 주요 문제로 꼽힌지 오래다. 곁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인 산업 연수생과 불법 근로자 등의 외국인 노동의 형태도 다양하고, 노동 대가의 미달·각종의 학대·법적 신분의 결여 등의 외국인 노동과 관련된 문제들도 그 만큼 다양한데, 사실은 일체의 문제들은 한국 사회의 몇 개의 구조적인 결점에 귀결된다.

첫째, 중세 사회에서 백정과 사당패들이 천인 대접을 받았듯이, 현대 한국 사회는 중소기업에서의 막노동을 철저하게 천시한다. 흔히 “3D직종 기피 현상”으로 불리는 사회적 중세는, “권력”과 “안정”을 의미하는 지식·전문·고소득 직종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열 경쟁과, “피지배”와 “불안정”을 상징하는 저임금 육체 노동에 대한 절대적인 무시와 맹목적인 기피를 뜻한다. 즉, 고소득의 “지식”이 저임금의 “노동”을 지배하고 “노동” 위에 군림하는 반봉건적 후발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신분 상승을 갈망하는 체제 순응적인 주민들은, “노동”을 해방시키고 “노동”에 존엄성을 부여하기보다는 “노동”을 무조건 포기하고 전문적·행정적 기능을 맡으려고 개인간의 비인간적인 경쟁을 벌인다. 노동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푸대접을 받는 저임금 노동 비인간적인 경쟁을 벌인다. 노동이 실질로 경제적으로 푸대접을 받는 저임금 노동 위주의 대량 생산 사회에서, 체제 순응적인 인구가 “노동”과 “낮은 신분”을 동일시하여 “노동”을 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단 노동자인 만큼 사회로부터의 응분의 존경과 대우를 기대할 수 없다. “노동자”를 “공들이”·“공순이”로 아는 사회에서, 외국 노동자의 입장이 국내 노동자의 입장보다 더 유리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

둘째, 한반도의 독특한 지정학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다른 주변부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 미국에 대한 종속성이 심하고, 구미 계통의 종교인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만큼, 한국인의 인종관(人種觀)도 철저하게 구미·백인종 위주로 짜여져 있다. 백인과의 신체적인 흡사성까지 갖추려고 머리염색·성형수술을 대량으로 하는 한국 젊은이들을 봐도 “백인 흄모”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고유 문화에 대한 무시와 파괴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논의로 하고, 백인들이 유색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는 현대의 세계 질서 하에서 백인에 대한 무분별한 흄모가 기타 인종에 대한 무시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실제로, 백인(주로 구미인)에 대한 “과잉 친절”로 편찬까지 맞는 한국인들의 동남아인·흑인에 대한 태도가 인종주의·인종 차별의 최악의 형태라 봐야 한다. “원승이”, “원시인”, “깜둥이”와 같은 노골적인 언어적 폭력, 흑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에 대한 극단적인 학대, 동남아의 오래된 역사·문화에 대한 완전한 무시 등은 이 근본적인 인종주의적 태도를 잘 보여 준다. 그리하여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출신의 경우에는, 비록 그는 노동자가 아니다 해도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가장 원색적인 차별을 면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셋째, 독재가 이미 와해되었지만, 민주적 법치보다 독재 국가 특유의 초법적 인치와 정경 유착의 문화가 아직까지 더 보편적인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교육도, 명성도, 인격도 아닌 경제적 “부”(富)와 이 “부”에 의한 “인맥”일 뿐이다. “부”的 중요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이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대학교 교직도, 초중고교의 성적도, 대학교 입학도, “신성”한 병역 의무에 대한 면제도, 정당의 공천도 다 거의 공공연하게 매매·거래되는 사회는 없을 것이다. 이 독특한 현상은 오랜 독재로 인한 “적법”, “합법” 개념에 대한 대중적 인식·존중의 결여와, 다른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얻어진 훨씬 더 많은 풍요의 혼합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부자의 만능, 부에 대한 갈망의 이면에 빈자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와 빈자에 대한 절대적 무시가 감추어져 있다. “부자 집안”을 흔히 “좋은 집안”으로 부르고, “풍요롭게 산다”는 말 대신에 “잘 산다”고 표현하는 언어적인 현실은 사회 인식의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출신은 한국에 와서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위에서 보이듯이, “노동”, “非백인 계 인종”, ‘가난’에 대한 한국인의 일상적 태도를 감안하면, 아시아·아프리카 빈국들 출신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일체의 인권을 향유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해 진다. “노동하는 가난뱅이”와 “까만 인종”들이 천시를 받는 사회에서, 제3세계 노동자의 인간 존엄성부터 잘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평등”과 “차별로부터의 자유”는 어림도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사회 인식 문제에 그쳤으면 몰라도, 설상가상 격으로 구조적인 임금 착취와 불법 체류·법적 신분의 박탈 등의 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겹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살이”가 지옥의 축소판으로 보이기만 한다. 우선, 한국의 “산업 연수생”的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임금 지역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모집·투입하여 “합법적인” 임금 착취한다는 것은, 대만·홍콩·말레이지아 등의 아시아 대부분의 신흥 산업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 때 4·5십만원 선에 그치는 “월급도 아닌 월급”과 주택·급식·문화 환경의 열악성 때문에 “산업 연수생”들이 보다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탈하여 불법 노동을 하면서라도 다른 곳에서 보다 나은 노동·생활 환경과 월급을 얻으려는 의지는 “산업 연수생” 대부분에게 생기는 마음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불법 노동의 유혹을 보다 강하게 만드는 것은 “무조 전적인 법 집행”보다 “정치적 필요성”에 더 쏠리는 한국의 외국인 인구 통제 정책이다. 즉, 한국인과의 결혼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대학교 공부를 통한 신분 상승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불법 노동자들을 “현대판 천민 계급”으로 묶어 둔 한편, 불법 외국인 노동자 없이 이미 공장을 가동시킬 수 없는 중소기업인들의 “표”들을 의식해서 단속·강제 추방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는 것은 작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탈을 해도 강제 송환 정도의 절대적 불이익이 없으리라고 확신하는 “산업 연수생”들은 이탈을 매우 손쉽게 결정한다. 이탈한 뒤에 실제 수입이 증가되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서 각종의 학대와 임금 체불의 전횡 등을 막아 낼 길은 없다. 저항할 힘도, 호소할 곳도, 자구할 방법도 없는 불법 노동자들이 문화·인종·신분적으로 한국 사회로부터 이중·삼중으로 소외되어 반한적(反韓的) 감정들을 품고 있는 것은 다반사다.

결론적으로는, 지배층에 의해서 조장되는 “반(反)노동·반(反)제3세계”식의 왜곡된 의식과, 산업연수제도의 내재적인 결함, 그리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의 애매성 등은 외국인 근로자 노동의 무제한적인 착취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들을 만들어 주고, 외국 노동자들의 문화·사회적 체계 편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고등 교육을 계속 받아 한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가질 기회도, 한국 노조와 연대하여 공동 투쟁을 통해서 권리들을 쟁취할 기회도, 언론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도 철저하게 빼앗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착취와 동정의 대상이 될지언정 지식 획득·권리 투쟁의 주체는 되지 못한다. 철두철미하게 소외된 외국인 불법 노동자의 집단을 무분별하게 착취하는 일부 중소기업인들이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인 반면에, 많은 피해자들에게 한국에서의 체류는 백해무익의 고충과 개인적인 파탄을 의미할 뿐이다. 한국 관광 비자 등의 필수 서류들을 불법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사채업자들에게 미화 5-6천불 정도의 빚을 내서 한국에 온 뒤에 월급 체불 등으로 빚을 상환 치 못하여 귀국을 포기하거나 채권자들의 폭력에 의한 근친들의 희생을 무력하게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들을 필자는 적지 않게 본 적이 있다. 산재에 의한 노동력 완전/부분 상실, 학대로 인한 정신 이상 발생 등의 비극적인 경우들도 허다하다. 결국, 잘못된 대중 의식으로 주류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경제 구조의 하부에서, 그리고 법의 사각 지대에서 존재하는 현대판 “천민”집단이, 대부분의 인구의 완전한 무관심, 그리고 일부 기업인의 과다한 착취로만 막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초중고교생들과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은 인권적 차원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그들은 “어른”(교사나 공장 주인, 현장 책임자) 한 사람의 판단으로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신체적 자유의 박탈(즉, 구타), 인간 존엄성의 박탈(즉, 폭언), 사회·경제적 불이익(불리한 내신 정보; 월급 체불) 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천민적” 위치를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양쪽의 경우에는 억압의 외형이 비슷하나 그 의미와 방향은 판이하다. 어린이에 대한 “학교”的 테러적인 지배와 그들에 대한 소비주의 공세는, 장차 그들을 권력에 무조건 굽복하면서 “성공”, 소비 분야에 있어서 남들과 살인적인 경쟁을 벌일 줄을 아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 시민”으로 만든다는 것을 뜻한다.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하면 “권위 도전”으로 간주되어 선생으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곤 한 경험, “포케몬”과 같은 최신 만화를 모르면 “인기 없는” 죄로 동급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곤 한 경험 등으로 “윗사람”과 다수에 무조건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터득한 사람은, 아예 낙오자로 전락하지 않은 한 직장에서의 “충성 경쟁”과 소비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즉, 어린이에 대한 “공권력”的 상습적인 폭력은 “훈육”적인 의미가 우선적인 반면에, 한국 사회와 어차피 동화되지 않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종의 인권 박탈은 주로 경제적 수탈과 문화·인종·경제적 서열 질서의 확인에 따른 심적 만족을 뜻한다. 한국 근로자 월급의 절반 이하를 받으면서 보다 열악한 여건 하에서 일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경제적 수탈의 의미가 분명하지만, 임금 체불이나 산재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거부 등도 결국 비정기적이고 과도한 수탈을 뜻한다. 그리고 구미와 일본에 대한 심한 집단적 열등감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의 일각에서는, 한국보다 세계 질서에서 더 불리한 주변적 위치에 처해 있는 동남아·아프리카 등지의 출신들을 박대하면서 “선진 지역”에 대한 열등감을 “후진 지역”에 대한 우월감으로 달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은 바 있다. 무제한적인 경제적 수탈과 “야만인”, “외부인”으로서의 비하를 수반하였다는 것은 고대 희랍·로마의 노예소유제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아동들을 “예비 구성원”으로 폭력에 길들이는 사회, 외국인 노동자들을 “영원한 비(非)구성원”으로 폭력으로 다스리면서 무제한적으로 수탈하는 사회, 이 사회는 어떤 내부적 구도를 가졌길래 이 만큼 폭력을 만병통치약으로 아는가? 이 사회 내부의 “정식 구성원”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외부인(한시적 외부인인 아동, 영구한 외부인인 외국 노동자)에 대한 폭력의 사용은 이 정도로 보편적 인가? 여기에서 지면의 제한으로 한국 사회 전체의 내부 관계 분석을 시도할 수 없고, 외부에 대한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요인에 관한 간단한 지적을 하도록 하겠다.

보통 한국 사회의 상식으로는 이 사회의 현실은 “유교적 권위주의” 내지 “유교적 권위주의의 잔존”으로 규정된다. 즉, 위계 서열의 강조, 특정 직종 (교수 등)에 대한 특수한 존경, “어른”에 대한 “가신”들의 추종적 관계, 충효와 보은 (報恩)을 세우는 가치관 등이 순전히 전통 사회와 그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유제 (遺制)이고, 언젠가 현대화·세계화의 급류에 못이겨 차차 사라지겠다는 논리다. 한국 사회의 현실이 유교적인 구호 (“효도”, “존장사상”, “애국”, “보국”, “충성” 등)로 많이 치장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전시대의 유교적 상식이 현대 상식의 집단 무의식적인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대 한국 사회 내부의 관계 체계는 전통적 유교와는 구조적으로 판이한 면들이 많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통 유교의 축소와 단순화, 왜곡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전통 유교가 원칙적으로나마 “도덕”과 “대의 명분”, “구도” (求道)를 추구하였지만, 현재 한국의 미시적 사회 조직들이 “권력”과 “돈”, 종합적으로 말하면 “영향력으로” 결속되어 있다. 예외도 없지 않지만, 현대 한국에서는 임원이 재벌 총수를, 정치 지망생이 정당 당수를, 그리고 박사과정생이 지도 교수를 각각 “인격의 모범”이나 “덕망이 높은 오른”으로 받았을 때는 “밥그릇”을 보장해 줄 마피아적 “보스”로 냉소적으로 보면서도 아들이는 것보다는, “밥그릇”을 보장해 줄 마피아적 “보스”로 냉소적으로 보면서도 이해 타산에 따라서 각계의 “보스”들에게 “조건부” 충성심을 다짐하는 것이다. “철새 같은” 정치인들이 몇 번씩이나 당직을 바꾸어 가면서 자기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매일 보면서, “교수가 정년 퇴직으로 영향력을 잃으면 그 논문의 인용 빈도도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현대 각종의 “패거리”들의 “충성심”과 유교적인 가치들이 같다고 볼 수 있겠는가? 도덕적 합리화의 구실을 갖고 있는 “유교적 유산”의 괴설을 제거하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광경은, 수많은 작은 “권력의 피라미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커다란 “전국가적 피라미트”이다. 보통 한 사람의 “우두머리”를 결정으로 하는 이들 “작은 피라미트”들의 구성 원칙은, “우두머리”가 전체 구성원들에 대해서 일종의 “생사여탈권” (추방권, 강등권, 승진권 등)을 쥐고 있고, 하부 구성원들이 상부 구성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두머리”에 대해서 복종과 충종을 충실히 하는 만큼 갖가지 이득을 “하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밑으로부터”의 견제와 중앙집권과 분권의 균형, 다수 의사에 의한 합리적인 결정 과정이 잘 되어 있는 것이 흔치 않은 예외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회 조직들이 유교적 도덕과 신권 (臣權)이 완전히 결여되는 마피아적 색채의 “전제 (專制) 왕국”들로 보인다. “밑으로부터”의 충성과 “위로부터”의 각종의 “시혜” (施惠)가 맞교환되는 커다란 “인신 장터”인 현대 한국, 이를 “전근대적 집단주의가 강한 왜곡된 후발 자본주의”로 볼 수 있어도, “유교적 사회”로 보기 가 힘들 것이다.

상하 추종 관계가 절대적 비중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의 “정식 구성원” 사이에서도 태생적이고 보편적인 인권들이 잘 지켜질 리는 만무하다. 신체적 자유의 박탈인 구타 행위가 이미 드물어졌지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반말투로 면박을 주고 호통을 치는 등의 인간 존엄성의 박탈 행위는 아직은 “직장 생활의 기본”으로 남아 있다. 지도 교수가 제자에게 취직의 가능성을 미끼로 내걸고 논문 대필 (代筆)을 강요하는 등의 일종의 “무급 임업 강요 행위”, 학과나 단과대학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인사 문제를 대학 본부에서 대신 결정한 뒤에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는 등의 “하부 직원 결정권 침해 행위” 등은 지금도 다반사다. 한 마디로, 권력의 극단적인 집중과 “밑으로부터”的 희생과 맹종을 강요하는 “상명하달”식의 마피아적 일상의 문화는,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 향유권, 자주적 판단 등의 현대 인권적 가치들에게 전혀 설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밥그릇”이 빼앗길까 해서 평생을 “눈칫밥”으로 살아야 하는 한국의 “위대한 보통 사람”에게는 인간 존엄성의 보편성을 생각할 여유가 있겠는가?

이 “위대한 보통 사람”이 외부인·타자 (他者)인 어린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그토록 가혹하고 인권 침해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은 이유를, 바로 이 “권력과 맹종의 절대화”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각종의 “윗사람”들에 대한 예속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일반 한국인이, 인본주의의 보편적인 가치들보다 각 인간의 위계 서열 내의 특수적 위치와 권력층 소속 여부를 우선 인식한다는 것은 과연 놀랄 일인가? 그리고 전사회적인 위계 서열 내의 “막내” 위치에 있고 (혹은, 그 서열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고), 권력은커녕 기본권조차도 보장이 안되어 있는 아동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일반 한국인들이 특하면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체제·인식 상으로 당연한 일이 아닌가? 내부인들이 최상의 가치로서 연관되어 있는 권력과 돈 (“영향력”)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가치가 결여되는 외부인들은 내부인 집단으로부터 동등한 대접을 받을 리 만무하다. 공장의 중간 책임자가 자신보다 서열이 낮고 자신에게 달려 있으면서도 적어도 법적인 신분이 있는 한국 노동자에게조차도 반말투와 욕지거리를 서슴지 않는다면, 서열에서의 위치도 법적인 신분도 없는 외국 불법 노동자에게 못할 것이 있겠는가? 내부인 간의 일상적인 관계가 절대적 상하 서열과 예속성, 일상화된 정신적 폭력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 외부인 (한시적 외부인인 아동, 영구적 외부인인 외국 노동자)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과 횡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3) 결론을 대신하여: 폭력병의 치료법.

위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외부적 소외 집단인 재학 아동이나 해외 노동자(특히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각종의 인권 침해(특히 일상적인 물리적 폭력) 현상은, 맹목적인 복종과 “위로부터”的 시혜(施惠) 위주의 비(非)인권적이고 반(反)인권적인 사회 전체의 일상적인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위에서 한 예로 든 체육 교사에 의한 학생 구타(소위 “체벌”) 행위의 경우에는, 이 일선 교사가 교장으로부터 더 이상 권위주의적인 “지시”가 아닌 “권고”나 “충고”를 받고, 학교 운영 문제들에 있어서 제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조금 더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중소 기업들의 고질적인 병폐인 주인의 전횡과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푸대접 등이 일소되어야 외국 노동자의 인권 보호도 가능해 질 것이다. 한 마디로, 직장마다 일선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운영 참여권을 획득하여 상부와의 평등하고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서열 사회가 현대적 평등 사회로 변신하여 주변부에 밀린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열과 그 서열에 따른 “하향” 폭력이 지배하는 반(半)중세적 사회에서 소외 계층들의 인권이란 가망이 없다.

그러나 서열 사회의 평등화 과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한국 내의 인권 상황이 이미 국제적으로 문제화된 오늘에는 급한 대책이 절실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우선 각급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물리적 폭력(소위 “체벌”)과 비하적 태도(교실 안의 반말투 사용), 언어적 폭력 등을 명시적으로 엄금하여 위반자들에게 교사 자격을 시범적으로 박탈하여야 한다. 학교의 교사 폭력 문제는 사회적 통념의 영역이자 법적인 “사각 지대”로 남아 있는 한, 본질적인 진척을 기대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법은 사회적인 통념을 앞질러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구시대의 학교의 무수한 권위주의적인 폐습들(교사의 불심 검사, 학생의 신체·모발에 대한 통제 등)은 정부의 해당 부서의 명시적인 엄금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이 문제들을 권위주의에 젖은 교사들의 재량에 맡겨 두면, 앞으로도 학생들의 몇 세대가 또 권위주의의 유행병에 감염될 것이다. “밑으로부터”的 개혁이 가장 효율적이고 영향이 크지만, 이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발적이고 산발적인 “체벌” 반대 운동은 반드시 법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체계화·조직화될 것이다.

외국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탈만 조장하는 저임금·단체 모집·강제적 직장 배정 위주의 소위 “산업연수제”보다, “취업 허락제”는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즉, 중소기업들이 일단 외국 인력 없이 가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산업 노동력 수입 정책”을 명시적으로 발표하여 해외의 국내 취업 지망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취

업 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방식으로 취업 이민이 법제화되면,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합법적 이민자가 직장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임금 액수도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보호와 직장 선택권, 자율적 협상권이 있는 해외 노동자를 임금 차별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고, 노골적으로 멸시·학대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비(非)구미원 주민, 빈민,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의식은 당장 없어질 수 없지만, 해외 근로자 착취를 가능케 하는 법적 허점들을 일단 일소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최근 학교 교사 폭력(“체벌”)의 가시적인 감소와 해외 노동자에 대한 동감 여론 등의 현상으로 봐서는, 소외 계층의 인권 보호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강화되리라 믿어진다. 다만, 부분적 개선에 자족하여 서열 사회에 대한 평등 지향적 현대화적 개혁의 필요성을 망각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수양부모운동

박영숙(한국수양부모협회 회장, 주한영국대사관 공보관)

I. 영국의 아동권리

1. 아동권리 및 혜택

영국의 아동권리나 사회복지는 한국의 사회복지비용과 비교해서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영국 총 세출, 즉 연간 국가 예산의 32%가 사회보장비용이며 의료보건 및 각종 국민혜택이 17% (도합 약 50%가 사회복지비), 교육예산이 12%, 주택 환경5%, 국방예산이 7%이다. 우리나라 보건복지예산은 5% 정도이라고 한다.

한국은 국가는 가난하고 개인은 부유하지만(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는데) 영국은 국가는 부유하고 개인은 가난하여 국가가 사회보장기금을 통해 사회복지국가를 이루고 있다. 개인은 가난하나 많은 세금을 내고 아동관련협회나 각종 자선단체에 많은 기부금을 낸다. 영국 국민 75%가 자선기금을 내는데 비해 한국은 개인의 자선기금비율이 미미하다.

영국은 이미 1948년에 부모들이 돌볼 능력이 없거나 방치하는 아동들에게 대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아동법'을 제정했다. 영국의 지방정부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 버려진 아동,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수용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학대받는 아동, 도덕적 위험에 노출된 아동, 부모의 통제밖에 있는 아동,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아동들은 지방정부가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을 이양 받아 수양부모가정에 위탁한다. 사실상 영국에서는 버려지는 아동은 없으나 부모가 방치하고 있거나 학대했을 때 지방정부가 그 아동을 구출하여 시설 또는 수양가정에서 양육시킨다.

가정법원은 아이에게 요주의 (보호 명령: CARE ORDER)를 내려 아동의 양육권을 친부모에게서 탈취, 지방정부에 넘기는데, 양육권을 빼앗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상적인 양육을 할 수 없는 정황이 증명되어야하거나, 아동이 이미 부모의 보호나 컨트롤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 양육권박탈은 반드시 아동에게 이 결정이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며 아동에게 최상의 선택이 확인되어야 한다. 법원 결정시 아동도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고, 가디언 즉 후견인, 수양부모나 대리 부모 등을 선정할 수 있다. 모든 법정 결정은 아동복지와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전제로 하며, 최근의 변화는 아동의 최상의 선택은 친 가정에서 머무는 것이며 그것이 불가능하면 수양가정 등 가족적 분위기에서 양육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최근에 아동보호 품질

개선책 (Quality Protect Programme)을 마련, 요보호아동을 돌보는 프로그램의 품질개선과 사회복지사의 협력을 요하는 아동의 서비스개선에 주력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략 프로젝트에 최근 정부는 3년간 약 3.75억 파운드를 책정, 각 지방정부의 요보호아동 보조 프로젝트개선에 투자한다.

영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법으로 16세까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나 정부는 방치되는 아동이 없이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16세 이후에도 약 70%의 아동들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데,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정부가 각종 직업훈련을 시켜줄 의무를 지닌다.

영국의 부모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가능한 한 당국과 협조할 의무를 지닌다. 지방정부는 아동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도록 책임을 다하며 아동이 21세가 될 때까지 조언을 한다. 영국정부는 한 아동의 탄생 시 일정한 아동양육지원금 (Child Benefit)을 준다. 뿐만 아니라 5세 이하의 유치원 교육은 사설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가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¹⁾

2. 영국의 아동복지법 제정

영국의 아동권리법은 1933년 '아동 및 청소년법'으로 첫 탄생하였는데, 영국아동권리의 근간을 이루는 법은 1989년에 제정된 아동법 (Children Act 1989)이다. 이 법은 199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어 아동의 복지 및 권리에 관한 엄청난 개혁을 가지고 왔다. 복잡한 법 조항을 단순화시켰고 더욱더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고 지속적인 아동보호 및 복지의 지침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1948년에 제정한 유아 및 유치원 교육법, 1971년과 73년의 가디언즉 후견인법, 1975년 아동법, 1980년 수양부모(가정위탁)법, 1982년 아동보호법, 82년 아동 보육원 법, 그 외 수십 개의 법들이 종합된 법이며 아동관련 수십 개의 절차규정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89년 아동법'에는 아동 양육, 아동의 부모에 관한 상황 및 양육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 이런 권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 보고서를 필요로 하는지 등에 관한 규정도 들어있다. 그 외에도 1985년 '아동유괴 및 친권법', 86년 '가족법', 91년과 95년 '아동지원법', 91년 '아동관련 형사처벌법', 1998년에는 '범죄와 법질서 파괴법'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

3. 수양부모제도 및 아동시설

영국의 지방정부는 가족과 떨어져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건강, 교육, 친부모와의 교섭

1) The Official Handbook of United Kingdom "Britain 2000" 168쪽

일반 삶의 질에 관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최선책으로 기. 미아 발생시 대부분 수양가정을 찾아 돌보게되고, 수양가정은 아동보호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3명 정도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이나 시설이외에는 정부가 늘 정기 감사를 하는데, 수양가정이란 수용 외에 정부는 자체부자유 아동 등을 위한 시설이나, 자선단체, 개인, 특정기업 등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아동을 보호하는 수양가정이나 각종시설은 아동의 부모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대부분 지방정부 아동복지과 등과 파트너로서 각 아동의 미래설계나 교육계획을 함께 설계하고 논의한다. 그리고 시설이나 수양가정을 떠나기 위한 준비나 미래의 직업계획을 각 아동과 함께 3자 논의하고 조언을 하며 21세까지 아동의 미래를 위해 각종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양가정은 언제나 아동의 권리이나 복지 또는 교육을 위해 지방정부를 상대로 불평작업 (complaints procedure)을 시작하거나 아동의 미래를 위해 정부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1997년 보고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집 떠난 아동의 보호서비스 점검(People Like Us: Review of the Safeguards for Children Living Away from Home) (p169, Britain 2000)"에서는 시설수용아동의 아동학대사례를 여러 건 조사한 결과, 정부가 집 떠난 요보호아동의 특별 서비스 및 양육 및 교육질 향상을 약속하게되었다. 요보호아동의 고품질 서비스 예산 이외에도 정부는 수양부모, 기숙사학교 및 시설아동을 감사할 새 독립기관을 신설하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시설이나 단체에 근무할 인원들의 범죄기록을 손쉽게 조사할 수 있는 경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범죄기록조사기관을 따로 설립했다.

영국은 1992년이 후로 줄곧 버려지는 아동, 요보호아동 즉 지방정부가 양육해야 할 아동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양부모가정에서의 보호아동은 줄곧 증가 추세에 있다. 1994년이래 지방정부가 낮동안 돌보아주는 즉 day care 센터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숫자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1998년 3월 이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요보호아동으로 등록된 아동은 30,000여명으로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준다.²⁾

4. 입양

영국의 지방정부 즉 구청이나 도청 시청 군청 등에서는 입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지방정부 자체에서 입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떤 자선 또는 NGO단체인 입양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부와 연계가 되지 않은

2) The Official Handbook of United Kingdom "Britain 2000" 169쪽